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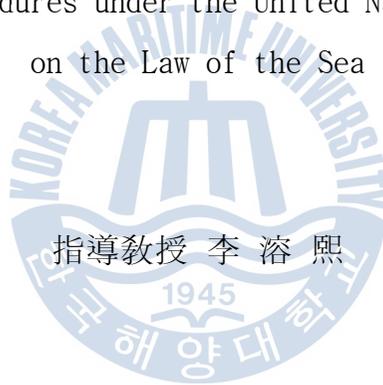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法學碩士 學位論文

#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한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s of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2013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 事 法 學 科

姜 賢 珠

본 논문을 강현주의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정 영 석 (인)

위 원 강 우 예 (인)

위 원 이 용 희 (인)

2012년 12월 12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目 次 】

ABSTRACT ..... i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해양 분쟁의 규제 필요성 및 분쟁해결제도의 발전과정 ..... 6

제1절 해양 분쟁의 정의 및 유형 ..... 6

1. 해양 분쟁의 의의 및 발생원인 ..... 6

2. 해양 분쟁의 유형 ..... 8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입법적 연혁 및 구성 ..... 18

1.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 배경 ..... 18

2. 분쟁해결제도의 제정과정 ..... 20

3. 분쟁해결제도의 구성 및 특징 ..... 30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에 대한

선결 조건 ..... 39

제1절 임의적 수단에 의한 자발적 분쟁해결 원칙 ..... 39

1.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 39

2. 임의적 수단에 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 ..... 41

3. 당사국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협약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의무 ..... 49

제2절 임의적 수단에 대한 신속한 의견교환의 원칙 ..... 51

1.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전개 과정 ..... 51

2. 유엔해양법협약상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 .....	54
<b>제3절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결조건이 적용된 국제 판례 .....</b>	<b>57</b>
1. 남방참다랑어 사건 .....	57
2. 영국·아일랜드의 혼합이산화연료 제조공장 사건 .....	64
3.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조호르해협과 주변에서의 간척사건 .....	71
<b>제4절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사전적 한계 .....</b>	<b>74</b>
1.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에 대한 엄격한 해석 .....	74
2. 유엔해양법협약과 분쟁 당사국이 체결한 협정과 의 충돌 .....	76
3. 분쟁 당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부재 .....	77
<b>제4장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상 한계 .....</b>	<b>78</b>
<b>제1절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 및 예외의 제정 과정 .....</b>	<b>79</b>
<b>제2절 제297조에 따른 연안국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 거부 가능성 .....</b>	<b>82</b>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및 정지 .....	84
2.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행사 .....	87
3.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제한에 관한 국제판례 .....	88
<b>제3절 제298조에 따른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의 선택적 예외 .....</b>	<b>91</b>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	92
2. 군사활동 및 범 집행활동에 관한 분쟁 .....	97
3.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	98
4.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배제선언 .....	101
<b>제5장 결론 .....</b>	<b>105</b>
<b>參考文獻 .....</b>	<b>111</b>

## - 표 목차 -

< 표 1 >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대표적 사례 .....	9
< 표 2 > 도서 영유권 분쟁 사례 .....	14
< 표 3 > 제287조에 따른 국제재판소 및 법원 선택을 한 국가 현황 .....	34
< 표 4 >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적 배제선언을 한 국가 현황 .....	102



# **A Study on the Limits of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Kang Hyun-Joo

Department of Maritime Law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Yong Hee

## **ABSTRACT**

From ancient times, ocean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s for human. All State have keep interests to the ocean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and have struggled to secure their interests in various ways, each other. As a by-product of the competitions, such a many disputes have been occurred among States. In principle, marine disputes have originated under the conflict between mare liberum and mare clausum. International community had made a effort to regulate the marine dispute in a manner of peaceful and speed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As the result, the sophisticated dispute settlement system including the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was established i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der the system, prior to the resort to compulsory settlement system entailing binding decisions, the parties to dispute has an obligation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rriving at an agreement in advance. This

obligation applies to all types of disputes, including ones that involve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parties to dispute should choose the peaceful means and proceed expeditiously to an exchange of views. It is entitled "General Provisions" essentially requires States to settle disput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prior to referring the matter to the compulsory settlement system found in Section 2 of Part XV.

If the dispute were not resolved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systems might be applied to dispute.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certainly justified with respect to some issues under the Convention and prescribes for limitations and optional exceptions to apply of the procedures. The complicated formulation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ocedures which were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indicate when dispute settlement is necessary for the functions of the substantive rules.

Article 297 of the Convention, which deals with some of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mandatory dispute resolution, predominantly addresses how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will apply and operate with respect to the freedoms of the high seas in the EEZ and on the continental shel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fisheries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But, if the dispute originates the exercise of right of discretion by coastal State,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would not apply.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allow for States Parties to exclude certain categories of disputes from compulsory settlement system entailing binding decisions. States may declare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time thereafter, that they do not accept the system available under Section 2 for those disputes relating to sea boundary

delimitations, involving historic bays or titles, military activities and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s exercising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se provisions were prepared for the needs of the State because States didn't want to apply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system entailing binding decisions about the disputes involved the crucial interests of the State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nvention is named for a superior and comprehensive system, but this system is not widely used ow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prerequisite and the limitations on applicability of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applying the procedures to the dispute.

Under the Objective,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s follow :

Chapter II defines the causes and types of marine dispute and examines the negotiation history of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relat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Chapter III reviews the pre-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Chapter IV analyses the limitations on applicability of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rough the elaborate examination on the Article 297 and 298 of the Convention.

Chapter V,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summar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s some measures for preparing future disputes with neighboring State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류에게 있어 해양은 중요한 자원이자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해양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해양의 자원 및 가치의 인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은 역사적으로 해양자유론과 해양영유론의 충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다툼은 현재까지 이어져 세계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영해와 공해의 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20세기에 들어서 공해와 영해의 이원적 구분을 기초로 한 해양법이 다원적 체제로 변화되면서 해양 분쟁도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와 해양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해 외에, 접속수역, 추적권제도, 자원개발을 위한 새로운 관할체제가 확립되면서, 각국의 대립도 다양하게 전개된 것이다.<sup>1)</sup>

해양 분쟁이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또한 국가 및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해양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선택적 의정서 형태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해양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1973년-1982년에 걸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해양의 종합법전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지구상의 모든 바다를 지역적 적용범위로 하는 지구적 규범(global norm)이자 해양법의 모든 분야를 물적 적용범위로 하는 포괄적 규범(comprehensive norm)이 마련되어 세계 모든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야의 인간 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체계가 제정되었

1) 이창위, “해양분쟁의 전개 및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 『국제법학회논총』, 제28권 제3호(2003), 172면.

다.2) 그 중에서도 유엔해양법협약 내 수 많은 제도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이고 진보적인 제도라고 볼리우는 분쟁해결제도가 제15부에 규정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은 유엔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채택된 이후 국제분쟁해결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에 해당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11년이라는 장기간의 교섭 끝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는 강제적인 분쟁해결제도의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그룹별 국가들 간의 타협과 협상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그 분쟁해결제도를 수락 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도입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3)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단일화 된 규범을 통해 해결하고자 세 개의 절로 나누어진 분쟁해결제도를 제정하였다. 제1절에는 분쟁 당사국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절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범주의 분쟁의 경우 제3절에 따라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제한 및 배제되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다.

이러한 분쟁해결제도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체제로써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58년 제네바 협약과는 달리 분쟁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선택적 의정서의 형태가 아닌 유엔해양법협약 내 제15부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별도 의정서에 의한 해결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협상의 초기부터 분쟁해결제도를 협약의 일부분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들은 의무적으로 분쟁해결제도 조항도 수락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양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4) 그러나 분쟁해결제도는 해양 분쟁의 다양화, 국제사회의 분권적 권력구조, 국제사회의 구조 변화에 따르는 각국의 이해 대립 등으로 인해 상세하고 복잡한 내용을 두게 되었는데5) 이러한

2) 정해웅, “유엔해양법협약이 동북아에 던져 준 난제와 대응방안”, 『독도연구저널』, 제18권(2012), 4면.

3) 최태현,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15권(1988), 255면.

4) 이창위, 전제논문, 172면.

원인으로 인하여 분쟁해결제도는 그 자체 내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게 되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가 제15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일화 된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지 못하며, 많은 해양 분쟁들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배제되었다.<sup>6)</sup>

다양한 이익그룹의 주장을 반영하여 분쟁해결제도를 제정함에 따라 분쟁 당사국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을 과도하게 존중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일반적 제한 및 선택적 예외 규정을 허용함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4월 20일에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범집행활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에 대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sup>7)</sup>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해양 분쟁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제정된 분쟁해결제도의 입법적 발전과정, 협약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기 위한 선결적 조건인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노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결적 문제,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의무를 다한 후에 적용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적용상 한계에 대해서 분석한다.

5) 이창위,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서울법학』, 제5권 제2호(2002), 2면.

6) Oda S, "Dispute Settlement Prospects in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4 No. 4(1995), p. 863.

7)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 기탁”,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6.04.20) <http://www.mofat.go.kr/> (검색일자 : 2012. 08. 1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해양 분쟁의 개념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해양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모습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분쟁해결제도의 논의 배경 및 제정 과정을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결조건인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국들은 해결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수단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절에 규정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데, 유엔해양법협약상에는 분쟁 당사국간 동일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여도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수단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허용되고 있어서 협약과 다른 대안적 수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제15부 제1절에 규정된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된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제297조 및 제298조로 인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상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관련 국제회

의에서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한 회의록 및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내재적 한계 및 외재적 한계가 드러난 국제 관례, 국내 문헌 및 외국 문헌을 취합 및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이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제2장 해양 분쟁의 규제 필요성 및 분쟁해결제도의 발전과정

### 제1절 해양 분쟁의 정의 및 유형

#### 1. 해양 분쟁의 의의 및 발생원인

##### 가. 해양 분쟁의 의의

해양 분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규명하기 전에 먼저 분쟁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분쟁의 정의로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이 “마브로마티스 팔레스타인 양허계약사건(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case)”에 대한 1924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결로,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분쟁이라 함은 “두 사람 간에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한 입장 불일치(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의 충돌(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이라고 정의하였다.<sup>8)</sup> 이 정의는 그 뒤 연면히 인용돼 오다가 가장 최근에는 1995년 6월 30일 동티모르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다시 인용된 바 있다.<sup>9)</sup> 그러나 국가 간의 모든 의견의 불일치가 국제법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간 상대방의 주장이나 청구를 저지하거나 양립불가능한 주장이나 청구를 제기하는 정도의 상황이 이루어져야 분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국제분쟁에는 정치적 분쟁(사실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이 있다. 정치적 분쟁이란 기존 법질서의 타당성에 도전하는 측과 그것을 수호하려는 측의 의견의

8) 김석현,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국제분쟁의 의의 및 그 존재의 확인”,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2011), 113면.

9) “영유권 분쟁과 국제정치”, 『문화일보』 (2005. 2.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097085> (검색일자 : 2012. 10. 8)

10) Ion Diaconu,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States : History and Prospects", in R. St. J. Macdonald and Douglas M. Johnston, ed,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International Law : Essays in Legal Philosophy, Doctrine and Theory*,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6), pp. 1100-1101.

불일치, 즉 적용할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분쟁, 국가의 주권 또는 독립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분쟁, 국제법을 떠나서 다루는 분쟁을 말하고, 법률적 분쟁이란 기존 법질서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견의 불일치, 즉 적용할 국제법규가 존재하는 분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분쟁, 국제법에 의거하여 다루는 분쟁을 말한다.<sup>11)</sup> 이렇게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 분쟁은 해당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나, 정치적 분쟁은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은 가능하지 않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정치적 해결방법 만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sup>12)</sup>

국제 판결에서 정의된 법률적 분쟁의 개념을 해양에 적용시켜 보면 ‘해양의 이용 및 관리 또는 해양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입장 불일치,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해양 분쟁의 발생원인

해양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며 인류를 부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세계 모든 국가는 해양에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사회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익들은 어업, 화물의 운송, 탄화수소와 광물 개발, 해군 훈련, 과학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활동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sup>13)</sup> 세계의 각 국가들은 해양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독점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을 영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해양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해양의 이용가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국가들의 활동은 해양경계확정이나 해양활동의 통제 등에 관한 복잡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sup>14)</sup> 과거, 해양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해양에서 뗏목을 이용해 통항하던

11) 김찬규, “국제분쟁의 조정과 유엔의 기능”, 『북한』, 제41호(1975), 169-170면.

12) 정갑용,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의 Mixed Case에 대한 고찰”, 『영남대 독도연구』, 제5호(2008), 111면.

13) Natalie Klein, *Dispute Settlement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1.

14) 성재호·이창열, 전계논문, 478면.

시기에서 비롯<sup>15)</sup>되었는데, 이 문제는 계속되어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15세기 후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까지 이어졌으며, 현재도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국가 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양 이용 관계에 있어 다수의 특징들은 해양영유(Mare clausum)와 해양자유(Mare liberum) 이론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다.<sup>16)</sup> 즉, 전통적으로 해양에는 자유의 바람과 주권의 바람이 대립하여 왔는데, 가능하면 공해를 확대한 다음 공해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를 지배하려는 해양세력과 육지의 주권 내지 관할권을 먼 바다로 확장시키려는 연안국 세력이 충돌하여왔다.<sup>17)</sup> 그러나, 해양강대국의 권한이 우세하였던 만큼 해양자유 이론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이론은 그로티우스에 의해 법 이론으로 확립되었다.<sup>18)</sup> 그러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이후 국가들은 독립주권국가 형태의 특징을 지니기 시작하였으며, 주권국은 각자의 독립된 주권에 따라 그들의 영역에서 배타적 관할권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배타적 관할권은 해양의 자유가 통용되고 있던 해양의 이용과는 적합하지 않았다.<sup>19)</sup> 이로 인하여 해양 자유 이론이 지배적이었던 해양에 있어 해양 영유이론과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충돌은 현재까지 이어져 다양한 유형의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 2. 해양 분쟁의 유형

해양 분쟁은 넓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에 관련된 분쟁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 속에서 국가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다.<sup>20)</sup>

15) Helmut Treck, *Reflections on the Contemporary Law of the Sea*, (Leiden/Boston: Martinus Nijhoff publication, 2012), p.5.

16) *Ibid.*

17)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 삼영사, 2011), 956면.

18) 해양의 자유에 대한 그로티우스의 접근은 해양의 개념을 공유물에 바탕을 두었고, 그에 따라 해양은 사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유물은 또한 무주물로써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이론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있으며,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Helmut Tuerk, *op. cit.*, p. 5.

19) Natalie Klein, *op. cit.*, p. 7.

20) Yogesh K. Tyagi, "The System of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Law of the Sea

## 가.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에 관련된 분쟁

일반적으로 영토 분쟁(territorial dispute)은 영유권 분쟁과 국경 분쟁 두 가지로, 전자는 영토의 귀속과 배분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경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다툼을 뜻하는데 이 같은 원칙을 바다에 적용하게 되면, 해양 영토 분쟁은 해양 경계획정 분쟁이 해당된다.<sup>21)</sup> 또한 내수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영해, 접속수역, 국제해협, 군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그리고 이들 가운데 위치하는 도서에 관한 법 제도들은 이런 해양관할수역의 범위 및 경계획정, 그리고 이들 수역 내 국가나 개인들의 활동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sup>22)</sup>

###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해양경계획정이란 옆으로 인접하거나 마주보는 국가 간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각종 관할수역의 경계선을 긋는 문제이다. 이 해양경계획정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장 해결이 어려운 해양 분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주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외측 한계선을 인접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획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관할수역의 기준선인 영해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관련되어 있다.<sup>23)</sup>

< 표 1 >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대표적 사례 <sup>24)</sup>

사건명	당사국	판결일	재판기관	판결내용
그리스바다르나사건	스웨덴:노르웨이	1909.10.23	PCA	영해 경계획정
북해대륙붕사건	서독:네덜란드, 덴마크	1969.02.20	ICJ	대륙붕 경계획정 법칙제시

Convention : An Overview", *The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 No.2(1985), p. 193.  
21) 이정환·최재선·김민수, 『해양·정책·미래』, (서울 : 블루&노트, 2010), 156면.  
22) 김부찬, “해양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0, 24면.  
23) 권문상,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9, 35-36면.  
24)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제6판』, (서울 : 도서출판 두남, 2006), 110면.

비글해협사건	아르헨티나:칠레	1977.02.18	중재재판소	도서귀속, 영해경계획정
영불해협 대륙붕사건	영국:프랑스	1977.06.30	중재재판소	대륙붕 경계획정
에게해 대륙붕사건	그리스:터키	1978.12.19	ICJ	대륙붕 관할권부인
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튀니지:리비아	1982.02.24	ICJ	대륙붕 경계획정법칙적 용방법제시
메인만 경계획정사건	캐나다:미국	1984.10.12	ICJ	대륙붕/어업수역 경계획정
기니·기니비사우 해양경계사건	기니:기니비사우	1985.02.14	중재재판소	영해/경제수역/ 대륙붕 경계획정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	리비아:몰타	1985.06.03	ICJ	대륙붕 경계획정법칙적 용방법 제시
기니비사우·세네갈 해양경계사건	기니비사우:세네갈	1989.07.31	중재재판소	영해/경제수역/ 대륙붕 경계획정
상피엘·미크론 해양중재사건	프랑스:캐나다	1992.06.10	중재재판소	대륙붕/어업/경 제수역 경계획정
엘살바도르·온두라스 해양경계사건	엘살바도르:온두라 스	1992.09.11	ICJ	도서귀속, 내수/영해/경제 수역 경계획정
얀 마옌도 사건	덴마크:노르웨이	1993.06.14	ICJ	어업수역 경계획정

### (1) 기선설정에 관한 문제

영해기선이 설정됨으로 인해 국가의 관할수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선 설정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관할수역은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어, 기선과 관련한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에서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통상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해안선이 깊게 굴곡을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선의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바로 직선기선의 설정인데,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직선기선을 남용하여 설정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영해기선의 내측수역은 내수로서 법적으로는 영토와 같은 취급을 받는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내수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설정하는 데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sup>25)</sup>

## (2) 영해 경계획정

영해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서는 협약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 국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해의 경계획정은 그 거리가 좁을 뿐더러, 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선의 설정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3)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까지의 수역으로써, 당해 연안국에게 해양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경제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수역이다. 협약 제57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안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경계획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74조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있

25) 김부찬, 전제논문, 25면.

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26)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4) 대륙붕의 경계획정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 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sup>27)</sup> 대륙붕에는 중요한 천연자원이 매립되어 있음으로 인해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범위는 최소 200해리에서부터 대륙변계가 연장될 경우 350해리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대항국이나 인접국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경우나 여러 국가가 공유 대륙붕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경계획정이 국가 간의 중요한 분쟁사항으로 발생한다.

1958년에 체결된 대륙붕에 관한 협약은 제6조<sup>28)</sup>에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합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선을 경계획정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의 원칙과 중간선의 원칙이

26)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관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27)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

28) ① 동일한 대륙붕이 연안이 서로 대항하고 있는 2개국 이상의 영토에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국가에 속하는 대륙붕의 경계는 당해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가 없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계는 중간선으로 한다. 이 중간선은 각국의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최단거리에 있는 각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동일한 대륙붕이 인접하는 2개국의 영토에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대륙붕의 경계는 당해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가 없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계는 각국의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최단 거리에 있는 각점으로부터 동일거리의 측정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대륙양상을 띠면서, 대륙붕 역시 배타적 경제수역과 마찬가지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확정에 관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개념정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범위설정에 관한 규칙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연안국마다 대륙붕을 설정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대륙붕이 설정되는 지역이 지형적, 지질학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sup>29)</sup>

## 2) 도서에 관련된 분쟁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조시에만 물위로 드러나는 간조노출지나 인공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섬은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서 분쟁은 크게 영유권 및 이를 둘러싼 해양 경계, 도서 주변 해양 자원, 협약에 규정된 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영유권 및 섬 인정 여부와 관련된 즉, 영토적 가치에 관한 분쟁이 주로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도서 주변 해양 자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도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121조에서 무엇이 섬인지, 섬이 어떤 관할수역을 갖는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rock)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sup>30)</sup> 또한 동조 제3항에서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

29)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륙한계 외측의 범위결정, 퇴적암의 두께, 그리고 대륙사면의 기부의 경사도의 최대 변화지점 등의 판단이다. Yogesh K. Tyagi, *op. cit.*, p. 194.

30) 박찬호, “국제법상 섬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고찰”, 『부산대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2009), 284면.

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특정 도서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 표 2 > 도서 영유권 분쟁 사례<sup>31)</sup>

분쟁 도서명	당사국	기간	재판소	물적 관할내용
Clipperton Island	프랑스/멕시코	1909-1932	중재재판소	영유권
Palmas Island	네덜란드/미국	1925-1928	PCA	영유권
Eastern Greenland	덴마크/노르웨이	1931-1933	PCIJ	영유권
Minquers&Ecrehos	영국/프랑스	1951-1953	ICJ	영유권
PNL Group Island	칠레/아르헨티나	1971-1977	중재재판소	영유권
① Meanguera ② Meanguerita ③ El Tigre	① 엘살바도르/온두라스 ② 엘살바도르/온두라스 ③ 온두라스/엘살바도르	1986-1992	ICJ	영유권·해양경계
① Hawar and Qit'at Jaradah ② Jubarah, Janan Island	① 바레인/카타르 ② 카타르/바레인	1991-2001	ICJ	영유권·해양경계
Hanish Island	예멘/에리트레아	1996-1999	PCA	영유권·해양경계
Kisikili/Sedudu Island	보츠와나/나미비아	1996-1999	ICJ	영유권·해양경계
Sipadan& Ligitan Islands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1998-2002	ICJ	영유권
Providencia, San Andres, Santa Catalina	니카라과/콜롬비아	2001-2007	ICJ	영유권·해양경계

### 3) 국가 관할수역 내 활동과 관련한 분쟁

#### (1) 어업 분쟁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어업분쟁은 영해의 범위에 관한 것과, 연안국 영해 이원의 일정한 해역에 대한 어업수역 설정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12해리 영해 폭 제도의 확립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창설 등으로 연안국의 관할 해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국제어업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sup>32)</sup>, 이와는 달리

31) 최종화, 전게서, 306면.

어업분쟁은 더욱 악화되어왔다.

국가 관할수역 내 어업분쟁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것은 연안국의 인접 해양에 대한 관할권 확대가 시작된 시기부터 발생하여, 전통적으로 공해자유어업원칙에 기초하여 조업해 온 어업국과 연안국간의 어장확보에 관한 충돌이 발생한다. 즉, 기득권 인정에 관한 분쟁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관습법 제도로 확립되고, 연안국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나 경계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원양 어업국 어선들의 연안국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분쟁 등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sup>32)</sup>

## (2) 해양오염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분쟁

해양환경은 곧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해양이 육상에서 기인한 지구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며, 해양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인류 생물의 70% 이상의 서식지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는 곧 지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sup>34)</sup>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제12부에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조에서는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협,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행위를 “해양환경오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sup>35)</sup>,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36)</sup>

해양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육상기인 오염원, 해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오염,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대기를 통한 오염 등의

32) 김민중, “한국의 원양어업관련 국제분쟁 사례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4권 제1호(2003), 69면.

33) 상계논문.

34) 최종화, 전제서, 61면.

35)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36) 상계협약 제193조.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특정 국가의 영역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오염이 인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공해로까지 확산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3) 해양과학조사 관련 분쟁

일반적으로 해양과학조사는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실험적인 작업”을 일컫는다.<sup>37)</sup>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①과학조사활동의 범위에 관한 문제, ②조사해역에 관한 문제, ③조사수단과 조사활동에 내재된 문제, ④조사자료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다. 조사활동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조사선의 활동 중 조사활동과 항해활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다.<sup>38)</sup>

조사해역과 관련하여서는 과학조사 위치가 연안국의 내수 또는 영해인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인가에 따라 연안국과 조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결정된다. 즉,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있어서는,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규제, 허가, 수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가장 논란이 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n the continental shelf)에 있어서는, 연안국은 단지 관할권을 보유함으로써 인해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up>39)</sup>

조사수단과 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조사선에서 분리된 상태로 운용되는 잠수정과 같은 장비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써 특히 타국의 수역에 침범하여 조사활동을 벌일 경우 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조사 자료의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과학조사를 허가 또는 동의한 연안

37) 이용희·강보석, “외국관할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제문제”, 『해사법연구』, 제17권 제1호(2005), 94면.

38) 최종화, 전게서, 186-187면.

39) 김대순, 전게서, 1056-1057면.

국의 소유인지, 조사주체의 소유인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sup>40)</sup>

#### 나. 국가관할권 이원의 수역에 관련된 분쟁

국가관할권 이원의 수역이란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수역으로써 공해와 심해저가 이에 속한다.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 제1조는 “국가의 영해 또는 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해양의 모든 부분”을 공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유엔해양법협약 제86조는 “어느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 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으로 새롭게 규정하였다.<sup>41)</sup>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①항행의 자유, ②상공비행의 자유, ③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④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⑤어로의 자유, ⑥과학조사의 자유<sup>42)</sup>를 향유할 수 있다.

공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선박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권 문제와 관련된 다툼, 공해에서 금지된 행위(해적행위, 노예수송,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무허가 방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연안국이 공해에 대하여 자의적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어업 문제 등과 같은 모습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심해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제1조에서는 심해저를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해저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심해저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심해저관련분쟁이란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의 관리, 자원개발 및 그 이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관련된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해저관련분쟁은 우선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다. 심해저지역은 연안국의 국가관할권, 특히 대륙붕의 범위가 확정된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범

40) 최종화, 전게서, 187-188면 참조.

41) R. R. Churchill and A. V. Lowe,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3), p. 144.

42)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의 결정을 위한 기준과 원칙의 불확실성은 아울러 심해저의 범위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그 범위에 관하여 연안국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안국 대륙붕범위결정에 대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못한다.<sup>43)</sup> 만일 국제해저기구가 협약에 따라 심해저개발 신청자에게 그 일정한 구역에 대한 작업을 승인하고 그에 대한 자원개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그 지역이 특정연안국의 대륙붕과 중복된다면, 이로 인하여 연안국과의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공해와 관련하여 심해저는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만 한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상부수역 및 상공에 대하여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sup>45)</sup> 따라서 상부수역 및 상공에서의 외국의 항해자유, 비행의 자유, 해양과학조사의 자유와 심해저의 탐사, 개발활동에 관한 관할권 또는 활동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sup>46)</sup>

##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입법적 연혁 및 구성

### 1.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 배경

해양의 이용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해양영유론 및 해양자유론의 충돌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양 구역이 분할되고 다양한 형태의 충돌로 전개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제도를 확립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43) 상계협약.

44) 김부찬,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분쟁해결제도”, 『해양정책연구』, 제5권 제3호·제4호(1990), 346-347면.

45) 유엔해양법협약, 제135조.

46) 김부찬, 전계논문, 347면.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분쟁 해결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도는 1930년 헤이그에서 국제연맹의 주최 하에서 진행된 국제법의 법전 편찬을 위한 회의의 예비 작업(Preliminary Work)에서 나타났다.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영해에 대한 협약의 초안 내용에 대한 것이었지만 국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sup>47)</sup>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 정치 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고 1945년 이후 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에서 탈피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 국가는 연안국으로써, 이들이 국제회의에서 연합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sup>48)</sup> 이들은 대부분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sup>49)</sup>으로써 국가 간의 경제적 가치의 분배 문제가 국제정치 전면에 크게 부각되게 되었으며, 이것은 국제해양법 분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에 성행한 국가관할권의 일방적 확대 경향이었다.<sup>50)</sup> 영해 또는 어업수역의 형성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12해리 이상의 수역에 대해 주장한 국가는 1958년에는 20개국 내외였던 것이 1973년에는 90개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숫자의 증가 외에 주장하는 내용에도 변화가 생겨 1958년에는 12해리의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 반해서 1973년에는 200해리 수역에 대한 주장이 일반적인 성향을 보여주게 되었다.<sup>51)</sup> 그리하여 이 같은 기세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과열된 해양 분할 경쟁으로 인해 해양에 관한 국제법제도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리라는 우려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영해의 제한과 공해의 확장을 주장하는 해양강대국과 영해의 확장과 공해의 축소를 원하는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의논

47) Myron H. Nordquis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 (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p. 5.

48) E. D. Brow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1 Introductory Manual*, (Dartmouth : Aldershot/Hants, 1994), p.8

49)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은 기존의 개발도상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해의 자유와 해양경계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50)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대륙붕, 공해어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할권 확장에 관한 1945년 미국의 트루먼 선언이 기폭제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Helmut Tuerk, *op. cit.*, p. 10.

51) *Ibid.*

과정상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모든 회원국을 의무적으로 제3의 분쟁해결제도에 구속되도록 할 것인가, 해양에 관한 모든 분쟁을 강제적 제도에 회부되도록 할 것인가 또는 일부 제한된 범주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sup>52)</sup>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선택적 의정서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국가들은 제1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선택적 의정서로 채택되어 비준되지 않았던 경험을 되살려,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부로 규정하기로 합의하여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sup>53)</sup>

## 2. 분쟁해결제도의 제정 과정

### 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1930년 헤이그에서 국제연맹의 주최 하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해양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일반적이고 특별한 내용을 다룬 이후,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내용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는 해양 자원의 이용 및 개발을 규제하는데서 비롯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의 전체적 범위에 대한 합의의 시도가 있었으며, 회의에서는 성문화된 관습법 규정과 새로운 협약을 제정하였다.<sup>54)</sup>

제1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는 협약의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공해의 자유, 국제해협과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무해통항권, 공해에서 모든 선박에 대한 어업권, 연안국이 그들의 대륙붕 내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 해양 접근에 대한 내륙국의 권리, 어업의 보존과 관련한 어업분쟁의 해결과 같은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100개의 조항들을 성문화하는데 성공하였다.<sup>55)</sup> 또한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인식 속에서, 대륙붕 위의 수면과 연안국의 영해를

52) 성재호·이창열, 전제논문, 481-482면.

53) A. O. Aded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9(1975), p. 798.

54) Arthur H. Dean, "The second geneva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The right for freedom of the sea",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54 No.4(1960) p. 770.

55) *Ibid.*

넘어선 구역은 공해의 부분으로 인식되었다.<sup>56)</sup>

회의 진행 동안 해양법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과정에 있어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sup>57)</sup>,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s)<sup>58)</sup>, 공해에서의 어업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sup>59)</sup>, 대륙붕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sup>60)</sup> 총 4개의 협약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런 협약들은 다양화된 해양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제법위원회는 해양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국제법상 여타의 분쟁과 구분하여 해양법학자 및 해양과학자 등의 해양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해양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안함으로써 다시 해양 분쟁의 해결을 위한 특별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sup>61)</sup> 그 결과, 분쟁해결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단일화된 제도가 채택되지 못하였고, “강제적 분쟁해결에 관한 선택서명의정서 (Optional Protocol of Signature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를 제정하는데 그쳤다. 이 분쟁해결제도는 관련 협약과 선택의정서 모두에 가입한 국가에게만 적용되었으며, 협약에 의해 해결되는 분쟁을 제외하고 협약 자체의 해결제도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였다.<sup>62)</sup>

#### 나.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1960년 3월 16일부터 4월 26일 까지 88여 개국이 참가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에서 채택된 절차상 규칙에 의하여 유

56) *Ibid.*

57) U.N. Doc. No. A/CONF.13/L.52 (1958).

58) U.N. Doc. No. A/CONF.13/L.53 (1958).

59) U.N. Doc. No. A/CONF.13/L.54 and Add.1 (1958).

60) U.N. Doc. No. A/CONF.13/L.55 (1958).

61) 배수경,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2011, 61-62면.

62) Arthur H. Dean, *op. cit.*, p. 772.

엔 규정상 투표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sup>63)</sup> 동 회의에서는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영해의 폭과 어업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3해리 주장과 12해리 주장이 대립하였고, 6해리 영해에 6해리 접속수역을 인정하자는 미국의 타협안도 부결되어 회의는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sup>64)</sup>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주로 영해의 폭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이 됨으로 인해,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 1973년-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1958년 해양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이 발효된 후에도 세계 각처에서는 해양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일련의 대형 유조선 사고에 대한 해양 오염문제로 인해 기존 해양법의 미비점이 노출되었으며, 우월한 해양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한 해저 자원개발 독점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는 가중되었다.<sup>65)</sup> 이와 같이 급속한 기술 혁신과 해양환경 보호, 다수 개도국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 사회 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양법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다.<sup>66)</sup> 이에 대하여 주 유엔 Malta 대사는 “국제적인 해양 공간에 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해양법원을 포함한 내용을 조약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다.<sup>67)</sup>

##### 1) 제1차 카라카스 회기 (1973)

새로운 해양법질서에 적합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준비절차로서 진행된 해저평화이용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분쟁해결제도를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미국 대표단은 이 제안들을 한 문서 안에 다루기 위해 노력하였다.<sup>68)</sup> 우선 14

63) *Ibid.*

64) R. R. Churchill and A. V. Lowe, *op. cit.*, p. 15.

65) 해양법포럼,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I』, (서울: 지인북스, 2010), 11면.

66) 상계서.

67) Myron H. Nordquist, *op. cit.*, p. 6.

"Only Malta's proposal for a draft ocean space treaty provided procedures, including an International Maritime Court, for settling all disputes in International Ocean Space"

68) *Ibid.*

개의 주요 초안들을 작성한 후에, 미국 대표단은 각 국의 여러 대표단들과 이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해저위원회 최종 회기의 마지막 무렵에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일반적 내용들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해양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국가 간에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이 내용 외에도 일반적, 지역적, 또는 특별 협정을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안을 해저위원회(The Sea-Bed Committee)에 제출함에 있어, 미국 대표단은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sup>69)</sup> 이 제안의 제출 과정에서 미국 대표단인 Mr. John R. Stevenson 은 “동일한 시간 내에서 국가들이 다양한 수단에 의해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최대 가능한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분쟁해결제도에 즉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분쟁해결제도의 해석에 대한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 정부에게 “많은 국가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들 지역에서 합의된 제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 대표단은 분쟁 해결을 위한 조약의 실질적인 조항에 중점을 맞췄다.<sup>70)</sup>

## 2) 제2차 카라카스 회기 (1974)

미국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된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회의는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 들어와서 제2회기로 전개되었다.<sup>71)</sup> 제2회기는 1974년 카라카스에서 개최되었는데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절차를 선택하였다.<sup>72)</sup> 그러나 미국의 제안으로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해진 후에도 카라카스 회기의 주요 위원회는 해양법협약의 본질적인 사안에만 중점을 두었고, 분쟁해결 제도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비공식그룹(Informal Working Group)이 결성되었는데 호주의 Ambassador Ralph L. Harry, 엘살바도르의 Dr. Reynaldo Galindo Pohl, 미국의 Louis B. Sohn의 주

69) *Ibid.*

70) *Ibid.*

71) A. O. Adede, "The Basic Structure of the Disputes Settlement Part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1(1982), p. 126.

72) 이명근, 전계논문, 8면.

도 하에서 여러 대표단들로 구성이 되었고, 회기의 마지막 무렵에 30개 이상의 대표단들이 비공식 그룹의 업무에 참가하였다.<sup>73)</sup> 비공식그룹은 사전에 제출된 문서에 기초하여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11개 항목<sup>74)</sup>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각국의 의견에 대하여 각각 항목마다 나열한 형태의 Working Paper를 작성하였다.<sup>75)</sup>

카라카스 회기에서는 11개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비공식그룹의 제안과 관련하여 공식 그룹은 해양법협약 안에서 분쟁해결문제에 특정한 기본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하여 El Salvador 대사는 각 국가의 대표단을 대신하여 1974년 회기의 최종 논의 장소에서 다음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발표하였다.<sup>76)</sup>

1. 효율적인 법률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2. 협약의 해석에 있어 통일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73) Myron H. Nordquist, *op. cit.*, p. 7.

74) A. O. Adede, *The system for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 39.

1. 협약 안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2. 당사국들이 선택한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3.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다른 의무와의 관계
4.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해결절차에 부탁해야 할 의무
5.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써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해결절차에 부탁해야 할 의무
6. 일반적, 기능적 접근방식과의 관계
7. 분쟁당사국
8. 지역적 해결방법
9. 권고적 관할권
10. 적용법규
11. 분쟁해결조항의 예외 및 유보사항

75)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6, 13면.

76) Myron H. Nordquist, *op. cit.*, p. 7.

1.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effective legal means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avoid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s.
2. That uniform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should be sought.
3. While the advantages of obligatory settlement of disputes are thus recognized, a few carefully defined exceptions should be allowed.
4. That the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must form an integral part and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onvention, an optional protocol being totally inadequate.
5. With well-defined legal recourse, small countries have powerful means available to prevent interference by large countries, and the latter in turn could save themselves trouble, both groups gaining by the principle of strict legality which implies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agreed rules.

3. 분쟁에 대한 의무적 해결의 이점이 인식되어야만 한다.
4.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제도는 협약의 완전하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택적 의정서의 형태는 매우 부적합하다.
5. 잘 정의된 법률적 수단과 함께, 약소국은 강대국의 간섭을 막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강력한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양 국가들은 엄격한 적법성의 이론에 의한 수단의 보유할 수 있고, 그 수단은 합의된 규정의 효율적 적용을 의미한다.

### 3) 제3차 제네바 회기 (1975)

197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비공식작업그룹은 약 60개 국으로 증대되었다. 비공식그룹은 분쟁해결제도에서 어려운 문제 중의 한 가지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소의 관할권 선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up>77)</sup> 이와 관련하여 대표단들의 의견은 나뉘어졌다. 국제사법재판소를 찬성하는 국가들은 이 재판소가 해양에 관하여 발생한 문제의 몇몇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였고, 해양에 관한 사건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을 증대하여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법재판소를 옹호하는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는 새로운 해양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해양법재판소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새로운 해양법의 이론 및 전개에 대해 잘 아는 재판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중재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해양에 관한 협약들의 대부분은 중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별중재재판소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기능적인 접근을 강조하여 특별한 분야에 있어 유능하고 이러한 분야의 분쟁을 다루는 데 자격이 갖추어진 전문가들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8)</sup>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각각의 국가들은 이 타협안을 수용하여 4가지 유형의 재판소 및 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보면

77) *Ibid.*, p. 8.

78) 여기에서 의논된 내용들은 네덜란드의 Willem Riphagen교수에 의해 "Montreux Compromise"로 이름 붙여졌다.

분쟁 당사국들이 다른 법정 기관을 선택한 경우 대안적인 수단으로써 중재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중재는 분쟁 당사국이 다른 선택을 한 경우에 또한 분쟁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대안책이 되었다.<sup>79)</sup>

비공식그룹이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제네바 공식 그룹은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이것은 후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79조, 제280조, 제282조, 제283조가 되었다.

제3차 회기의 끝 무렵에는 Hamilton Shirley Amearasinghe 의장의 주도로 단일조항 형태의 새로운 Working Paper가 작성되었다.<sup>80)</sup> 제3회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11개 문제에 대한 비공식단일교섭안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비강제적 제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제도를 포함하여 국가들에게 분쟁해결 형태의 다양한 선택에 대한 충분한 허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다.<sup>81)</sup> 이 Working Paper는 분쟁 해결에 관한 17개 조항과 3개의 부속서로 구성이 되었는데 17개 조항은 강제적 제도 및 비강제적 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sup>82)</sup>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결 수단의 다양한 선택 범위 제공 (제1조-제7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 (제8조-제11조), 특별한 사건에서 긴급 제도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 (제12조, 제15조),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소 접근 및 재판소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와 관련된 내용 (제13조, 제16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유보와 지역적 구제의 적용 문제와 관련된 내용 (제14조, 제17조)과 같다.<sup>83)</sup> 3개의 부속서는 조정, 중재, 해양법재판소 규정을 다룬 일반적 제도에 대한 부속서와 어업, 오염, 해양과학조사를 다룬 특별제도에 대한 두 번째 부속서,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협의에 대한 세 번째 부속서로 구성이 되었다.<sup>84)</sup>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회기는 제2차 회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또한 중재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를

79) Myron H. Nordquist, *op. cit.*, p. 8.

80) A. O. Adede, *The system for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 43.

81) *Ibid.*

82) *Ibid.*

83) *Ibid.*, p. 44.

84) Myron H. Nordquist, *op. cit.*, p. 9.

선택하는 경우 해양법재판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sup>85)</sup>

#### 4) 제4차 뉴욕 회기 (1976)

1976년 뉴욕에서 열린 제4회기에서 Amerasinghe 의장은 “효과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는 국제 해양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이것의 이행은 협약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제3회기에서 의장의 계획 하에 준비된 Working Paper는 8번에 걸친 미팅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한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의 마지막 논의 과정에서 의장이 준비한 Working Paper는 회의에서 승인되었다.<sup>86)</sup> 이것에 기초하여 의장은 제3회기에서 작성된 비공식단일교섭안을 수정하여 수정된 단일교섭안 (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을 작성·배포하였다.<sup>87)</sup>

이 교섭안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일차적으로는 임의적인 제도로써, 분쟁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 유엔헌장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의적 해결방법 중에서 선택한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분쟁해결에 실패한 경우에는 의무적 제도로써 부속서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재판소, 해양법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또는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 중에서 분쟁당사자의 사전선택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였다.<sup>88)</sup>

#### 5) 제5차 뉴욕 회기 (1977)

제4차 회기에서 수정된 문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5차 회기에 제출되었으며, 745개의 성명서와 140개 이상의 실질적 제안들이 동시에 내용의 변경을 위해 제안되었다. 의장은 또 다시 제4회기에서 제안된 교섭안을 수정하였고, 단

---

85) *Ibid.*

86) *Ibid.*, p. 10.

87) 이명근, 전계논문, 8면.

88) 이용희, 전계논문, 16면.

일교섭안 제4부에 포함시켰다.<sup>89)</sup> 변경된 내용으로는 재판소 선택의 대안적 수단으로써 중재의 일반적 수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변경하였고 재판소 선택을 하지 않은 당사국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소를 선택한 당사국도 중재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분쟁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은 연안국의 특정한 권리 및 관할권에 대한 선택적 배제로 수정이 되었다.<sup>90)</sup>

#### 6) 제6차 뉴욕 회기 (1977)

1977년 뉴욕에서 열린 제6회기에서는 수정된 단일교섭안의 몇 가지 조항에 중점을 두어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일부 조항인 생물자원과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연안국의 재량권에 대한 제소의 제한, 연안국의 범 집행을 포함하는 군사적 활동과 같은 선택적 예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분쟁과 관련한 선택적 예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sup>91)</sup> 또한 해저분쟁해결제도의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일반적인 제도 안에 규정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저분쟁위원회가 설립되었다.<sup>92)</sup> 따라서 이 내용들은 비공식통합교섭안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에 포함되었고, 제15부에 구체화되었다. 이 교섭안은 세 번의 수정을 거쳐 협약 최종문서의 기초가 되었으며<sup>93)</sup> 추가적인 논의에서 제안된 내용은 이 문서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기여하였다.

#### 7) 제7차 제네바 · 뉴욕 회기 (1978)

1978년 제네바와 뉴욕에서 열린 제7회기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하여 매우 어려운 (1)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분쟁해결제도 (2)인접국과 대항국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그것에 대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각각 5명과 7명으로 구성된 비공식그룹이 결성되었다. 5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그리스의 Constantin A.

89) Myron H. Nordquist, *op. cit.*, p. 11.

90) *Ibid.*

91) 성재호·이창열, 전제논문, 484면.

92) Myron H. Nordquist, *op. cit.* p. 11.

93) 성재호·이창열, 전제논문, 484면.

Stavropoujou 대사의 주도 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였다. 주된 내용은 특정 문제에 대하여 강제적 조정 제도를 거친 경우 연안국은 이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7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핀란드의 Eero J. Manner 대사의 주도 하에서 인접국과 대항국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분쟁해결제도를 다루었다. 이 그룹은 중간선을 지지하는 입장과 등거리선을 지지하는 자 간의 타협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형평의 이론의 적용을 지지하는 자와 그 하위집단은 Louis B. Sohn 교수의 주도 하에서 구성되어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책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94)

#### 8) 제8차 제네바 · 뉴욕 회기 (1979)

1979년 제8회기에서는 해양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특별 재판부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였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다.<sup>95)</sup> 법률 전문가 그룹은(A group of legal experts) Harry Wuensche의장 주도로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제187조)과 관련하여 제11부에 관한 분쟁해결제도를 다루기 위해 구성되었다.<sup>96)</sup>

제8회기의 끝 무렵, 비공식단일교섭안의 수정 과정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특정 분쟁을 조정제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새로운 타협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sup>97)</sup>

제7회기에서 구성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7명의 교섭그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강제적 조정제도의 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특정한 분쟁에 관하여는 조정제도를 수용하도록 수정하였다. 후에 이 내용은 제297조 제2항 제b호로 규정되었다.<sup>98)</sup>

94) Myron H. Nordquist, *op. cit.*, p. 12.

95) *Ibid.* p. 13.

96) *Ibid.*

97) *Ibid.*

98) *Ibid.*

### 9) 제9차 뉴욕 · 제네바 회기 (1980)

1980년 제9회기에서는 이전의 회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인 해양과학조사, 조정, 범집행활동, 해저분쟁과 같은 특정한 분쟁에 대한 선택적 배제의 내용과 함께 다른 부분의 수정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아르헨티나는 제15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제15부 조항들은 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해결보다 강제적 조정제도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으며 강제적 조정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와 선택적 조정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up>99)</sup> 아르헨티나의 제안에 따라, 비공식총회는 제9회기를 재개하여 제15부의 재조정을 위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제15부는 세 가지 제도<sup>100)</sup>로 분배되었다.

또한, 강제적 조정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제3절에 포함되었으며, 비공식 단일교섭안의 세 번째 수정안에 포함되었다.<sup>101)</sup>

### 10) 제10차 뉴욕 · 제네바 회기 (1981)

제9회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제15부 문서는 초안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제10회기에서 수정된 문서에는 사법적, 기술적, 언어적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sup>102)</sup>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초안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재개된 제10회기 비공식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초안위원회의 마지막 보고서는 1982년 9월 24일에 진행된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제15부에 규정된 4가지의 재판소에 대하여 변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103)</sup>

## 3. 분쟁해결제도의 구성 및 특징

99) *Ibid.*, p. 14.

100) (1) 자발적 절차

(2)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3) 강제적 절차에 대한 제한 및 선택적 예외

101) Myron H. Nordquist, *op. cit.*, p. 14.

102) (1) 제15부 내 조항 및 부속서에 규정된 내용들의 통일

(2) 제15부 조항 및 부속서와 제11부 제6절의 조항들 간의 통일

103) Myron H. Nordquist, *op. cit.*, p. 15.

## 가. 분쟁해결제도의 구성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진보적인 제도라고 평가받는 분쟁해결제도는 제15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절 총칙, 제2절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제도, 제3절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의 제한과 선택적 예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sup>104)</sup>

### 1)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1절에서 규정된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의 원칙은 제279조-제285조의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79조에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83조는 ‘의견교환의무’의 원칙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과 그것의 이행방식에 관하여 의견을 신속히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당사국들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분쟁해결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국들이 다른 협정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제도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5부에 규정된 제도 대신 그 제도가 적용된다.<sup>105)</sup> 제284조는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수락되고 당사국이 조정제도에 합의한 경우, 어느 한 분쟁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sup>106)</sup>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원칙은 모든 분쟁에 적용되는데, 국가가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도 이 원칙을 준용해야 하며, 이 원칙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해

104) John Warren Kindt,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 The Model Provided by the 1982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2(1999), p. 1114.

105) 최태현,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15권(1998), 257면.

106) 상계논문, 258면.

결제도이다.

## 2)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분쟁의 해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은 제286조-제296조의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2절은 제1절의 임의적인 분쟁해결방식을 이용하였음에도 구속력 있는 결정이 수반되지 않았거나, 또는 교섭이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해결수단에 합의할 수도 없는 경우, 분쟁을 최종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sup>107)</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강제적 제도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분쟁 당사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규정 하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재판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입, 서명, 비준시 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규정은 재판기관의 선택에 대하여 국가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포함된 규정으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

제15부 제2절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제15부 제3절은 제297조-제299조의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제2절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제한하거나 선택적 예외를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국가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연안국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포함된 규정인데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강제적 제도를 회피하는 국가들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된 조항이다.

### (1) 절차의 선택

유엔해양법협약은 제3자에 의한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안함으로써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국에게 다양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중 일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107) 상계논문, 259면.

함으로써 유연한 분쟁해결제도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각국이 당해 협약의 분쟁 해결제도에 동의할 수 있었다는 이중적인 평가가 존재한다.<sup>108)</sup>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1절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제도가 적용된다. 어떠한 국가도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sup>109)</sup> 국가들에게 이용 가능한 재판소 선택권을 부여한 이유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결과였다.<sup>110)</sup>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국제적인 사법기관을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바, 그들의 분쟁을 구속력 있는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많은 개도국과 프랑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선택에 반대하였다.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별도의 재판기관 설립을 주장하였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중재재판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다른 몇몇 국가들은 협약상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할 해양 분쟁들이 단일 재판기관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sup>111)</sup> 협약 해석의 일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단일 법정(Forum)이 바람직하겠지만, 다른 한편 강제제도에 대한 당사국들의 우려와 부담을 고려하면 가능한 당사국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유일한 분쟁해결기구로 지정하는 안은 거부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sup>112)</sup> 그 결과 국가들은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분쟁해결제도

108) Brown, "Dispute Settlement and the Law of the Sea : The UN Convention Regime", *Marine Policy*, Vol. 21(1997), pp. 41-42, 신창훈, "해양분쟁해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 : 현황, 문제점 및 전망", 『제3회 해상세미나 발표논문집』, (2009), 5면에서 재인용.

109) 유엔해양법협약 제286조, 제287조.

110) Natalie Klein, *op. cit.*, p. 54.

111) Alen E. Boyle, "Dispute Settlement and the Law of the Sea : Problems of Fragmentation and Jurisdic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and Quarterly*, Vol. 46 No. 1(1997), pp. 40-41.

112) 백진현, "유엔해양법협약의 체제의 평가와 전망",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3호(2005), 133면.

중에서 하나 이상을 가입, 서명, 비준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선택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sup>113)</sup>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 종류의 재판소 또는 법원은 협약 안에서 그들에게 회부된 해양문제에 관한 법규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다른 규정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다.<sup>114)</sup> 따라서 국가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분쟁해결제도를 수락한 경우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기관에 회부되며, 동일한 분쟁해결제도를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에만 회부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른 국가들의 분쟁해결제도 선택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분쟁해결제도를 미리 정해놓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껴 아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향후 언제든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sup>115)</sup>

< 표 3 > 제287조에 따른 국제재판소 및 법원 선택을 한 국가 현황<sup>116)</sup>

State	Choice of Procedure (Preferred Forum)
Angola	(1) ITLOS
Argentina	(1) ITLOS (2) Annex VIII Special Arbitration
Australia	(1) ITLOS / ICJ
Austria	(1) ITLOS (2) Annex VIII Special Arbitration (3) ICJ
Bangladesh	(1) ITLOS
Belarus	(1) Annex VII Arbitration
Belgium	(1) ITLOS (2) ICJ
Canada	(1) ITLOS / Annex VII Arbitration
Cape Verde	(1) ITLOS (2) ICJ

113) Thomas A. Mensah, "The Role of Peaceful Dispute Settlement in Contemporary Ocean Policy and Law", in Davor Vidas and Willy Ostreng, ed, *Order for the Ocea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Hague/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 1999), p. 83.

114)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New York : Routledge, 1997), p. 299.

115) R. R. Churchill and A. V. Lowe, *op. cit.*, p. 458.

116) [http://www.un.org/Depts/los/settlement\\_of\\_disputes/choice\\_procedure.htm](http://www.un.org/Depts/los/settlement_of_disputes/choice_procedure.htm)  
(검색일자 : 2012. 11. 12)

Chile	(1) ITLOS (2) Annex VIII Special Arbitration
Croatia	(1) ITLOS (2) ICJ
Denmark	(1) ICJ
Egypt	(1) Annex VII Arbitration
Estonia	(1) ITLOS / ICJ
Fiji	(1) ITLOS
Finland	(1) ITLOS / ICJ
Germany	(1) ITLOS (2) Annex VII Arbitration (3) ICJ
Greece	(1) ITLOS
Honduras	(1) ICJ
Hungary	(1) ITLOS (2) ICJ (3) Annex VIII Special Arbitration
Italy	(1) ITLOS / ICJ
Latvia	(1) ITLOS / ICJ
Lithuania	(1) ITLOS / ICJ
Mexico	(1) ITLOS / ICJ / Annex VIII Special Arbitration
Montenegro	(1) ITLOS (2) ICJ
Netherlands	(1) ICJ
Nicaragua	(1) ICJ
Norway	(1) ICJ
Oman	(1) ITLOS / ICJ
Portugal	(1) ITLOS / ICJ / Annex VII Arbitration / Annex VIII Special Arbitration
Russian Federation	(1) Annex VII Arbitration / Annex VIII Special Arbitration
St. Vincend and the Grenadines	(1) ITLOS
Slovenia	(1) Annex VII Arbitration
Spain	(1) ITLOS / ICJ
Sweden	(1) ICJ
Switzerland	(1) ITLOS
Trinidad and Tobago	(1) ITLOS (2) ICJ
Tunisia	(1) ITLOS (2) Annex VII Arbitration
Ukraine	(1) Annex VII Arbitration / Annex VIII Special Arbitration
United Kindom of Great Gritain and Northern Ireland	(1) ICJ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 ITLOS
Uruguay	(1) ITLOS

### (2)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상 제한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 범주의 분쟁에 대해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제297조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중에서 ①항해·상공비행의 자유와 권리, ②해저전선 및 해저관선 부설의 자유,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권, ④해양과학조사, ⑤어업에 관한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강제 조정에 회부된다. 또한 어업에 관한 분쟁 중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행사에 관련된 분쟁 역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아닌 강제 조정에 회부된다.

이 규정의 의미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나 그들의 관할권 행사가 특히 재량권 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결정에 대해서는 타방 당사국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보장되어 온 해양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남용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만,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관한 분쟁은 강제적 조정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sup>117)</sup>

### (3)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적 예외

제297조에 따라, 일정한 범주의 분쟁의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

117) 최태현, 전계논문, 266면.

지 않도록 허용한 것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특정한 범주의 분쟁에 대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면선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제297조에 규정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배제가 포괄적 배제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제298조는 선택적 배제방식을 따르고 있다. ①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또는 권원과 관련된 분쟁, ②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및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대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법 집행활동에 관한 분쟁, ③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의 경우<sup>118)</sup> 국가가 서면선언을 한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나.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해양 분쟁을 단일화된 규범으로 해결하고자 제정된 분쟁해결제도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쟁 당사국에게 다양한 재판기관 및 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의 자유를 부여하였다. 제15부 제1절에서 협약은 분쟁 당사국에게 임의적 수단을 선택할 권한 및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위하여 제287조에 규정된 다양한 재판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국가들간에 발생한 분쟁을 어느 기관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타협함으로써 국가들은 제287조에 규정된 다양한 재판기관을 선택할 권한이 부여받게 되었다.

재판기관 및 법원을 선택할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다양한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 당사

118)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에 규정된 수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배제되지 않는다.

국이 합의한 수단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장려한다.<sup>119)</sup>

둘째, 국가가 아닌 이외의 주체에 대한 당사자 능력 인정하고 있다. 당사국 이외의 주체와 관련하여 협약 제20조 제2항은 재판소는 협약 제11부에 명시된 국가 이외의 주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재판소규정 제37조는 심해저분쟁재판부는 협약 제11부 제5절에 규정된 당사국, 심해저기구 및 기타 주체에 대하여 개방된다고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 규정된 당사국 이외의 실체에는 심해저기구, 심해저공사, 국영기업 및 협약 제153조 2항 (b)에 규정된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된다. 즉, 국가 간 발생한 분쟁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외의 주체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도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제 해양질서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를 세분화 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 분쟁해결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 내에서 해양경계획정 분쟁, EEZ 및 대륙붕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 역사적 만 및 권원에 관한 분쟁 등 여러 형태로 분쟁을 나누어서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제로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그 제한 및 예외에 대하여 적절한 배분하였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진행 속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많은 국가들의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분쟁들은 제한 및 예외의 규정으로 인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

119) 이창위, “해양분쟁의 전개 및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 181면-182면 참조.

##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에 대한 선결 조건

### 제1절 임의적 수단에 의한 자발적 분쟁해결 원칙

#### 1.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 가. 의의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에 제1절에 규정된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이다.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5부 제2절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기 이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은 주로 국가들이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강조된다.<sup>120)</sup> 이 일반적인 의무는 유엔헌장 제2조 제3항<sup>121)</sup>에서 비롯되었다. 즉,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은 “그들의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해야 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회원국의 모든 국가들은 유엔가입국이 아니어도 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sup>122)</sup> 이 내용이 포함됨으로 인해 나타난 중요한 영향은 분쟁 당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즉, 유엔헌장 제2조 제3항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정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나. 유엔헌장 제33조 제1항과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79조에서는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협약당사국간의

120) Natalie Klein, *op. cit.*, p. 31.

121)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122) Myron H. Nordquist, *op. cit.*, p. 17.

모든 분쟁은 유엔헌장 제2조 제3항에 따라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동 헌장 제33조 제1항<sup>123)</sup>에 나타난 수단들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124)</sup> 즉, 제279조에는 유엔헌장 제33조 제1항에 나타난 임의적 수단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279조의 초기 형태는 제33조 제1항에 나타난 수단들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최종 형태에는 제33조 제1항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수단들은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사용되며, 몇몇 수단들은 제287조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에 관한 부속서 뿐만 아니라 재판소 규정에도 언급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유엔헌장 제33조 제1항은 단지 '수단'으로써만 언급되어 있으며, 제33조 제1항의 전체 내용이 언급된 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33조 제1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엔헌장 제6부에 따른 해결도 규정하고 있다.<sup>125)</sup> 즉, 유엔헌장 제33조가 제시하는 중요한 점은 합의에 기초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들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제도를 이용하기 이전에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sup>126)</sup> 국가 간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5부 제2절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5부 제1절의 일반원칙에 규정된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분쟁해결의 기초는 자발적인 협상과 타협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강조되어야 하므로 유엔해양법협약은 당사국간 합의에 의한 임의적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당사국간 합의된 분쟁해결 수단으로 분쟁해결에 실패한 경우에

---

123)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124) 유엔해양법협약 제279조.

125) Myron H. Nordquist, *op. cit.*, p. 18.

126) Natalie Klein, *op. cit.*, p. 32.

만, 또한 양 당사국이 합의로서 다른 제도를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27)</sup>

## 2. 임의적 수단에 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

유엔해양법협약 제279는 임의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80조는 당사국들이 해결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즉, 분쟁 당사국들은 독자적으로 임의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가들에게 해결 수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함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이 나타난다. 제280조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국이 이용했던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가능한 명확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항이다.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제15부에 규정된 제도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고 분쟁 당사국들이 선택한 어떠한 임의적 수단을 협약에 규정된 제도 대신 사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은 협약 내 규정된 임의적 해결 수단이나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대안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당사국 간의 임의적 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합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내에 규정된 제도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분쟁 당사국에게 임의적 해결에 의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의무는 부여하고 있다.<sup>128)</sup>

### 가. 협약 내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분쟁 당사국들이 협약에 규정된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2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엔헌장 제33조 제1항 수단이 적용된다. 이 수단들 중 분쟁 당사국은 가장 적합한 분쟁 해결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 가능하다.<sup>129)</sup>

127) 김영구, “해양문제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상 제도의 고찰”, 『해사법연구』, 제3권 (1991), 50면.

128) Myron H. Nordquist, *op. cit.*, pp. 18-19.

## 1) 교섭 (Negotiation)

분쟁 당사국간의 교섭은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초보적인 수단으로써<sup>130)</sup> 분쟁당사국들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도움 없이 직접 만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모든 분쟁해결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는 방법이며 해양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sup>131)</sup> 국가 간의 교섭은 통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보통 외무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에 의하여 교섭이 진행된다. 실제로 교섭은 다른 모든 방법을 합친 것보다 빈번히 활용되어 왔으며, 실사 여타의 해결수단을 활용하더라도 교섭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sup>132)</sup>

교섭은 국제재판이나 기타의 제3자가 개입하는 해결수단과는 달리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국간 직접협상이나 타협을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섭의 목표는 충돌되는 주장에 대해 ‘주고 받는(give and take)’ 절충안에도달함으로써 우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도 없게 (no loser, no winner)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사회주의 및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분쟁해결수단으로 교섭을 선호한다.<sup>133)</sup> 또한 국가간 직접교섭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상호협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sup>134)</sup>, 상호간의 의무는 당사국간의 관계가 분쟁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문제 또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sup>135)</sup>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예상되면 국가들은 일차적으로 직접교섭에 나서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사국간의 교섭이 분쟁의 실질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외교과정은 다른 분쟁해결방법에 합의

129) *Ibid.*, p. 19.

130) 김대순, 전계서, 1213면.

131) 이석용, 『국제해양분쟁해결』, (대전 : 도서출판 글누리, 2007), 8면.

132) 김부찬, 전계논문, 49면.

133) 김대순, 전계서, 1213면.

134) 1983년 “국가재산·국가문서 및 국가부채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2조와 1978년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 제41조에 의하면,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먼저 ‘협약의 교섭의 절차를 통해’(by a process of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약’의 ‘교섭’이 서로 다른 수단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도 교섭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며 모두 분쟁당사국들이 제 3자의 개입 없이 직접 접촉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35) 김부찬, 전계논문, 49면.

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136)</sup>

교섭은 해양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접한 연안국가간 또는 연안국과 원양어업 국가 간 어업분쟁, 해양오염 관련 국제분쟁, 국제해협과 배타적 경제수역 통항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2) 중개 (mediation)

중개란 제3자의 개입의 정도가 주선<sup>137)</sup>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분쟁당사국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내용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sup>138)</sup> 즉, 중개는 분쟁을 엄격히 검토하여 양 당사국이 모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해결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정치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139)</sup>

중개는 분쟁당사국들의 의도를 상대방에 전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해결방안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 분쟁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최종 목표는 분쟁해결에 있으므로 당사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분위기가 갖추어지면 중개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에 해결안을 제시한다.<sup>140)</sup> 중개인의 의견 제시는 권고적 성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899년과 1907년의 두 헤이그협약 제6조도 중개인의 제안은 “완전히 권고의 성격을 가지며 결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국들은 중개의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사전합의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Rainbow Warrior號 격침과 관련한 분쟁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개를 부탁하면서 이 판정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하였었다.<sup>141)</sup> 또한 1979년 1월 8일 Montevideo협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의 Beagle

---

136) 상개논문.

137) 주선(good office)이란 제3자가 회담장소를 제공하여 분쟁당사국간의 교섭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38) Peter Malanczuk, *op. cit.*, p. 276.

139) J. G. Merrill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London : Sweet/Maxwell, 1984), pp. 27-28.

140) 이석용, 전계서, 11면.

141) 김대순, 전계서, 1215면.

Channel 분쟁에 대하여 중개가 행해진 것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sup>142)</sup>

### 3) 사실심사 (Inquiry)

사실심사 또는 국제심사는 국제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심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와 같은 국제기관이 국제분쟁의 원인인 사실들을 분명히 밝히게 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비교적 공식적인 국제기관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주선이나 중개와는 다르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만을 확인한다는 데서 그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조정과 다르다.<sup>143)</sup> 심사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사실관계를 심사하여 분쟁 당사국에게 최종심사보고서를 제시하는 데 이것은 단순히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며, 분쟁 당사국들에게 대하여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심사보고서에 어떤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의 자유에 달려있다.<sup>144)</sup>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899년과 1907년의 두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에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유엔총회는 1967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XXII)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기존의 사실 확인 방법들’(existing methods of fact finding)을 더욱 실효성 있게 사용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면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사실심사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명부(register of experts)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sup>145)</sup>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및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각 국의 입장에 기초한 주장으로 인하여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심사는 이것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 4) 조정 (Conciliation)

---

142) 김부찬, 전계논문, 53면.

143) 상계논문, 54면.

144) 김대순, 전계서, 1216면.

145) Von Glahn, *Law among nations :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 : Macmillan, 1976), p. 602, 김대순, 전계서 1216면에서 재인용.

조정이란 상설 또는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분쟁을 검토하고 분쟁당사국들에게 분쟁해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sup>146)</sup> 1928년 9월 26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일반의정서”(Geneva General Act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에 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sup>147)</sup>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절차를 통하여 자국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분쟁의 논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해결조건을 제시한다. 만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결조건을 기초로 분쟁당사국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종결된다. 반면에 당사국들이 분쟁해결조건을 수락하길 거부하면 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작업과정 및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의 임무가 종료하게 된다.<sup>148)</sup>

조정은 당사국에게 구체적인 해결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함으로써 사실심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sup>149)</sup>, 심사는 사실문제만을 다루고 조정은 법률문제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사실문제를 조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주장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개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기관에 의한 해결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정에 의해서 제시되는 해결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이러한 해결조건의 수락 여부는 당사국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조정은 사법적 기관에 의한 해결과는 차이가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심사제도의 성과에 자극을 받아 사실문제는 물론 법률문제도 함께 다루는 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제사회는 조정제도의 활약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조정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진 않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양자조약들은 일부 분쟁만을 조정에 부탁하고, 다자조약들

146) J. G. Merrills, *op. cit.*, p. 52.

147) 김대순, 전제서, 1217면.

148) Louis B. Sohn,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out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San Diego Law Review*, vol. 12(1975), pp. 1124-1125. 김부찬, 전제논문, 56면에서 재인용.

149) J. G. Merrills, *op. cit.*, p. 52.

은 광범위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 조정에 부탁되어질 수 있는 분쟁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조정은 복잡한 절차에 비하여 정치적 권위를 갖추지 못하여 커다란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sup>150)</sup>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간에 Jan Mayen 섬 주위의 대륙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 조정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양국이 수락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된 것은 조정절차의 유용성을 드러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151)</sup>

#### 나. 당사국 협정 및 대안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 1) 당사국들이 체결한 일반·지역·양자협정에 의한 분쟁 해결

유엔해양법협약 제282조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분쟁 당사국간에 합의한 협정이 있다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조항보다 우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의 당시에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282조가 규정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국가들은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합의한 제도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사국간의 분쟁해결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협정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양자협정을 많이 체결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다양한 협정에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1928년과 1949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반적 지침을 들 수 있다.<sup>152)</sup> 일반적인 양자협정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 또는 다양한 범위의 주제와 관련한 양자협정(우호조약, 통상조약, 항해조약)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재판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제해사기구에 따라 체결된 양자협정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은 또한 그들이 속한 지역적 기구에서 발생

150) 이석용, 전거서, 16면.

151) J. G. Merrills, *op. cit.*, p. 68.

152) Myron H. Nordquist, *op. cit.*, p. 26.

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는 데 1948년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조약, 1957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럽조약 및 중재위원회에 대한 의정서, 1964년 아프리카 통일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과 중재에 의한 것들이 있다.<sup>153)</sup>

해양의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체결하는 협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보다는 그들이 체결한 협정에 따른 분쟁의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고 또한 그 안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결을 위한 방법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수단을 선호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과 관련하여서 분쟁당사국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 2) 다른 대안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유엔해양법협약 제282조에는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들이 일반협정·지역협정·양자협정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초래하는 제도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에 규정된 제도 대신 그 제도가 적용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나타난 일반·지역·양자협정은 당사국간에 체결한 협정을 뜻하지만,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이 언급은 국제사법재판소를 수용한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제2항<sup>154)</sup>에 따른 선언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즉, 분쟁 당사국들이 사전에 국제

153) *Ibid.*

154)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한 경우, 이것은 ‘다른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당사국들의 반대가 없는 한 다른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이 방법에 따라 해결된다는 것이다.<sup>155)</sup> 이 견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수락 선언은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따라서 일반적·지역적·양자적 협정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Rosenne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데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이 단순한 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협정이든 당사국간에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합의한 경우에만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56)</sup>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 관할권 수락 선언은 제282조가 아닌 제286조<sup>157)</sup>와 관련이 있으며 이 조항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재판소 관할권 수락에 대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sup>158)</sup>

### 3) 당사국이 체결한 협정 및 다른 대안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

국가 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에 규정된 수단이 아닌 당사국간에 체결한 협정이나 다른 대안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국간에 미리 체결된 협정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사전에 합의한 제도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초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 당사국이 이러한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달리 합의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제282조에 규정된 수단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조건인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당사국간에 협정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모든 분쟁의 당사국들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적

155) Natalie Klein, *op. cit.*, p. 43.

156) *Ibid.*

157)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적분쟁해결제도의 제한 및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적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회부된다.

158) Natalie Klein, *op.cit.*, p. 44.

용하자고 결정하기 이전에 국가 간에 체결한 협정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제15부에 규정된 제도를 대신하여 행사되는 것이며 분쟁 당사국들은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분쟁 해결에 실패한 경우 언제든지 재판소에 회부하자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59)</sup>

두 번째 조건인 대안적 수단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제282조에 따른 대안적 수단이 오로지 중재 또는 조정만을 규정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국간 체결한 협정 및 대안적 수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국간에 체결한 협정 및 대안적 수단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절차를 선호하는 국가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160)</sup>

세 번째 조건인 분쟁 당사국이 이것의 적용과 관련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Amerasinghe의장은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제282조에 언급된 의무를 당연히 수용한다면 그들은 관련 분쟁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이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분쟁의 모든 당사국은 이 조항에서 언급된 특별 협정 또는 다른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해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것은 강제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보았다.<sup>161)</sup>

### 3. 당사국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협약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의무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는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을 도출해낸다는 가정 하에 협약 외에 규정된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선택한 협약 외의 수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제15부에 규정된 분쟁

159) Myron H. Nordquist, *op. cit.*, p. 27.

160) *Ibid.*

161) *Ibid.*

해결제도가 적용될 것이고, 분쟁 당사국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81조 내용에 따르면 제15부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는 분쟁 당사국이 선택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분쟁의 한 당사국이 이것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가 필수적인가? 당사국들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해결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문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재판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려되었던 사항이다.<sup>162)</su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각 국가의 대표단들은 분쟁 당사국은 그들이 선택한 절차에 의해 더 이상 분쟁해결에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제15부에 규정된 제도에 분쟁을 제소할 수 있다고 보아 제281조를 규정하였다.<sup>163)</sup> 그러나 만약, 다른 당사국이 제15부에 따른 분쟁해결을 거절하고 그들이 선택한 제도에 의해 해결이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단들은 몇몇 국제협정에서 분쟁 당사국들이 선택한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의 기준을 시간적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협정으로써 내륙국가의 통과 무역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ransit Trade of Land-lock Countries, 1965) 에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분쟁이든 9개월 안에 분쟁 당사국이 선택한 다른 평화적 분쟁해결제도 또는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sup>164)</sup>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281조 제2항에 인용하였고, 사전에 시간적 기한을 두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15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제281조 제1항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제도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분쟁 당사국들이

---

162) *Ibid.*, p. 23.

163) *Ibid.*

164) *Ibid.*

선택한 임의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해결에 실패한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협약상의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이 그 밖의 다른 분쟁해결수단을 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sup>165)</sup> 즉, 분쟁 당사국들은 협약 외의 특정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독점적인 한 수단만이 가능한 것으로 다른 수단은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당시 이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지만 분쟁 당사국이 분쟁해결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제15부의 기본원칙과는 일치함으로 인해 수정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었다.<sup>166)</sup>

## 제2절 임의적 수단에 대한 신속한 의견교환의 원칙

분쟁의 당사국은 그들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이나 교섭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해결은 되었으나 분쟁 해결의 이행방식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국과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sup>167)</sup> 제283조의 신속한 의견교환의무는 분쟁의 당사국들이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것임이 분명하고, 어떠한 임의적 수단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결과로써 발생하는 의무이다. 즉, 당사국이 선택한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해 규정한 제280조와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에 대해 규정한 제283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p>168)</sup>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의 목적은 분쟁의 당사국 간에 임의적 수단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 1.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전개

1974년에서 1975년 동안 진행된 유엔해양법회의를 거쳐 대표단은 교섭의 의

---

165) *Ibid.*, p. 23.

166) 해양법포럼,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Ⅲ』, 92면.

167) 유엔해양법협약 제283조.

168) David Anderson, "Article 28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omas A. Mensah, ed, *Law of the Sea, Environmental Law and Settlement of Disputes*,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 853.

무를 강조하였으며, 분쟁 당사국에게는 일반적·지역적·양자적 협정을 포함한 분쟁해결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sup>169)</sup>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에 대한 내용의 논의는 이미 1975년 분쟁 해결에 관한 비공식작업그룹이 준비한 문서에서 다루어졌다. 당시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만 논의되었으며, 특정 국가의 대표단들이 제시한 의견은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의무로 분쟁 당사국들은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공식작업그룹이 제출한 문서에는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 의무가 간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의견교환’(exchange of view)의 주요 목적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임의적인 수단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Amerasinghe 의장은 “의견교환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항은 당사국들에게 그들의 선택에 의한 수단 이용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며, 그 수단에는 직접적인 교섭·주선·중개·조정·중재 또는 사법적 해결을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sup>170)</sup>

그 후 신속한 의견 교환의 의무는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공식그룹(Working Group)<sup>171)</sup>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작성한 문서 안에 포함되었으며 이 공식그룹은 일반적 성격을 취하는 네 가지 초안 내용<sup>172)</sup>을 작성하였다. 후에 이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79조, 제280조, 제283조가 구성되는 데 기초가 되었다. 공식그룹이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제출하였을 당시에는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교섭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1977년 New York에서 열린 제6회기에 비공식단일교섭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교섭 또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대한 문구<sup>173)</sup>가 포함되었다. 당시 케냐의 Mr Adede

169) *Ibid.*, p. 852.

170) Myron H. Nordquist, *op. cit.*, p. 29.

171) 호주의 Harry 대사, 엘살파도르의 Galindo Pohl 대사가 공동의장으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반적 성격의 조항을 제정하였다.

172) 1. 만약 분쟁이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당사국들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2. 의견 교환과 유사한 절차는 협약안에서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절차가 당사국에 의해 선택되었다면 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종결된다.

173) 현재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당사국은 성실하게 교섭하거나 또는 다른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대사가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격 중의 한 가지는, 강제적 제도와 비강제적 제도가 결합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분쟁당사국은 특정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견 교환의 의무가 필요하며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이러한 의무를 제정함에 따라, 적절한 방법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에게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이것은 분쟁이 비강제적 제도에서 강제적 제도 또는 또 다른 강제적 제도인 재판기관으로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283조는 비강제적 제도에서 강제적 제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신속한 의견 교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신속한 의견 교환은 분쟁의 실질적 해결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174)</sup>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Mr Ranjeva 대사는 “신속한 의견 교환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외에도 분쟁의 양 당사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수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sup>175)</sup> 고 언급하였으며, 이스라엘의 Shabtai Rosenne 대사와 미국의 Louis Sohn 대사 역시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는 비공식그룹 (Informal Group)에 의해 작성된 예비문서 안에 다루어졌으며, 이것의 주요 의무는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을 통해 분쟁 해결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의견교환의 주요 목적은 임의적 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으로, 당사국간의 교섭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의적 수단에 의한 해결 역시 허용한다” 고 언급하였다.<sup>176)</sup> 즉, 제280조에 규정된 ‘당사자가 선택한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 내용을 재강조하여 당사국들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의 방법에

174) David Anderson, *op. cit.*, pp. 849-850.

175) *Ibid.*

176) *Ibid.*, p. 850.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sup>177)</sup>

회의 초반에 작성된 문서를 살펴보면 제283조와 관련된 규정의 일부에 교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1980년에 진행된 회기 후에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반적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981년 회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국들은 신속한 의견 교환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안에 특별하게 '성실하게'에 대한 내용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 문구는 삭제되었다.<sup>178)</sup>

## 2. 유엔해양법협약상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

### 가. 개념

유엔해양법협약상 신속한 의견교환의 의무는 국가들 간에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임의적 수단 또는 분쟁 당사국간에 체결한 협정 및 법정기관에 대한 분쟁의 제소 또는 조정과 중재제도에 대하여 국가 간에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sup>179)</sup>

우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국은 교섭 또는 다른 임의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해야만 한다. 분쟁 당사국이 각각 취하는 입장은 국가 간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서 또는 협상을 위한 자리에서 드러날 것이다.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단들은 제1차 해양법회의와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의 선택적 의정서와 같은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분쟁 해결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국가들의 이러한 입장은 시간이 경과하여 교섭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고, 또한 당사국간 협정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도 제시되어 협약 안에 규정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 협약 안에 규정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 있다.<sup>180)</sup>

177) *Ibid.*, p. 851.

178) *Ibid.*

179) *Ibid.*, p. 852.

180) *Ibid.*

유엔해양법협약 제283조에서의 의견 교환은 유엔헌장 제33조가 의미하는 ‘합의’와는 명확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제283조 안에서 ‘합의’로 표현되는 단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을 말한다. 제283조는 제15부 제1절에서 규정된 조항을 이행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제279조와 제280조를 이행해야만 발생하는 의무이다. 제283조상의 의견교환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임의적 수단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며, 임의적 수단 뿐만 아니라 강제적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국가 간 의견교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sup>181)</sup> 즉, 283조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 당사국 간 적절한 수단에 합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들은 교섭 또는 조정과 같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중재 또는 사법적 기관에 따른 해결 수단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국가들은 의견교환 및 확인 단계를 통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단계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sup>182)</sup>

#### 나.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이행 시기

제283조에는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이행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조항에 명시된 의무는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만 의견 교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제283조 제2항 ‘당사자는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해결에 도달하였으나 해결의 이행방식에 관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경우, 의견을 신속히 교환한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제283조에 규정된 의무는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sup>183)</sup>

당사국들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으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분쟁 해결의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국들은 부가적인 수단에 대하여 의견교환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수단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결수단의 이행에 대하여 불합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경우 추가적인

181) *Ibid.*

182) *Ibid.*, p. 853.

183) Myron H. Nordquist, *op. cit.*, p. 29.

의견교환 의무 역시 요구된다.<sup>184)</sup>

#### 다.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목적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사국에게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인하여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분쟁당사국이 취하는 입장에 대하여 의견만을 교환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회의 당시 의장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였고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목적은 분쟁에 대한 합의 또는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단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185)</sup> 1931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간에 발생한 Railway Traffic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sup>186)</sup>

“분쟁 당사국은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를 종결하기 위한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 당사국간 의견교환 의무는 분쟁해결에 도달할 의무를 의미하지 않으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이후 1969년 독일과 덴마크·네덜란드간에 발생한 북해 대륙붕사건에서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sup>187)</sup>

“분쟁 당사국들은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의견 제시와 함께 교섭 이행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것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쟁 당사국간에 해결수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획정의 특정 방법이 이전에 사용되었던 조건에

---

184) *Ibid.*

185) *Ibid.*, p. 30.

186) *Ibid.*

187) *Ibid.*

따라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 당사국 스스로 교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섭은 분쟁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분쟁의 당사국은 자신들만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sup>188)</sup>

제283조의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가 분쟁당사국에게 기여하는 점은 분쟁 해결 수단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인해 분쟁 소송이 개시되기 이전에 제15부 제1절 안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며 또한 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점은, 의견 교환으로 인해 제소국과 피소국 사이에 체결된 다른 조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제소국이 제282조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신속한 의견 교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국가들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당사국간 협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sup>189)</sup>

### 제3절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결 조건이 적용된 국제 판례

#### 1. 남방참다랑어 사건

##### 가. 사실관계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고도회유성 어족으로 제1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남방참다랑어는 남위 30도에서 50도 사이의 남반구의 공해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도 회유한다.<sup>190)</sup>

호주, 뉴질랜드, 일본은 남방참다랑어의 주요 조업국으로써 각 국가마다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을 도입하였고, 각 국별로 할당량을 정하여 조업을 하였다. 또한 세 국가는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 : Convention

18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F.R.G./Denmark; F.R.G./Netherlands), Judgment, ICJ, 1969, para. 85(a).

189) David Anderson, *op. cit.*, p. 852.

190) 김선표·홍성걸·정성희, 『남방참다랑어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보고서, 1999), 3면.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을 체결하여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 및 최적이용을 위한 목적에 합의하였다.<sup>191)</sup>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문기구인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가 설립되었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과학적 증거, 협약 비회원국들의 어획량 등을 바탕으로 세 국가의 어획량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원량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된 어획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어획량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자원량이 회복되고 있으니 어획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92)</sup>

세 국가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과학적 증거 및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시험조업 프로그램(EEP : Experimental Fishing Program)의 필요성을 인정, 1996년 “시험조업의 계획과 실행의 목표와 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sup>193)</sup> 그러나, 당시 목표와 원칙만을 채택했을 뿐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승인된 것은 아니었는데 1998년, 1999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시험조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세 국가간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8년 8월 31일 호주와 뉴질랜드는 분쟁의 존재에 관한 외교 각서를 일본에 전달하고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일본은 중개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호주측은 일본이 다시 제의했던 CCSBT 규정상의 중재절차도 거부하고, 분쟁의 본안 문제에 관한 해결절차에 합의가 없는 가운데, 1999년 7월 15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의거한 중재재판소의 구성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중재재판에 응할 것을 외교공한으로 요청하면서 중재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험 조업을 중지할 것도 함께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시험 조업을 계속하자 호주측은 일본의 시험 조업이 남방참다랑어 자원에 대한 중대하고도 회복불능(serious and irreparable)의 훼손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 7월 30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잠정조치 명령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sup>194)</sup>

---

191) 상계서, 4면.

192) 상계서, 6면.

193) 상계서.

## 나. 당사국 주장

### 1) 임의적 수단의 선택에 대한 당사국 주장 대립

남방참다랑어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세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자 CCSBT 가입국이라는 점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본이 시험 조업을 통하여 공해의 어업과 관련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조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중재재판소 의해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일본은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CCSBT 조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이 협약은 비강제적인 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95)</sup>

일본은 CCSBT에는 제소국이 주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sup>196)</sup>

“유엔해양법협약 제311조 제2항에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변경 없이 이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다른 협약으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그것은 협약 안에서 그들의 의무 수행 또는 권리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은 CCSBT의 권리 향유에 대하여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197)</sup> 이에 근거하여 CCSBT는 분쟁의 세 당사국들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 하에서 고도회유성어종과 공해어종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해 실제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인식하에서 만들어진 것 중의 하나이다. CCSBT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CCSBT는 자체적으로 세 당사국에 의해 남방참다랑어의 어종과 관련한 협력의 의무를 이행한다.

둘째,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이 규정됨으로 인해, 이 절차는 당사국들의 협력에 의해 이행되어진다. CCSBT는 남방참다랑어와 관련한 협력의 의무

194) 최중화,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치분명령”, 『해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1999), 32면.

195) Natalie Klein, *op. cit.*, p. 35.

196) *Southern Bluefin Tuna Case (Australia and New Zealand v. Japan), Government of Japan, ITLOS, Memorial on Jurisdiction*, para. 36.

197) Nisuke Ando,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and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a japanese perspective" in Thomas A. Mensah, ed, *Law of the Sea, Environmental Law and Settlement of Disputes*,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 871.

를 다한다.<sup>198)</sup> 따라서, 이 분쟁은 CCSBT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CCSBT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만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sup>199)</sup>

즉, 일본은 CCSBT 분쟁해결조항이 남방참다랑어에 관한 분쟁 수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중재재판소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분쟁 당사국들이 제311조 제2항에 의거 CCSBT를 따를 때 유엔해양법협약상 제15부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CCSBT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로써,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들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를 선호하여 이것은 일반적인 해양법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체제로써 그 자체로써 분쟁해결제도의 종합적인 성격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sup>200)</sup>

## 2)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에 대한 당사국 주장 대립

남방참다랑어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국가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것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283조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는가가 문제시되었다.

양 국간의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는 CCSBT 회의에서 각 국가마다 정해진 TAC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본이 시험 조업을 실시한 이유는 TAC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TAC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해 일본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요구가 제28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98) *Southern Bluefin Tuna Case*, Order, para. 118.

199) Nisuke Ando, *op. cit.*, p. 871.

200) *Southern Bluefin Tuna Case*, Applicants' Reply, para. 30.

1998년 일본이 독자적으로 시험조업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식적으로 CCSBT 제16조 제1항에 의거, 협의 및 교섭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1999년의 공동 시험 조업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각국은 의견을 달리하였고 일본은 또 다시 일방적으로 시험 조업을 실시하였다.<sup>201)</sup>

일본이 시험 조업을 실시하자 호주는 1998년 8월 31일 외교공문을 통해 일본이 CCSBT, 유엔해양법협약,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CCSBT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긴급한 교섭 및 협의(negotiation and consultation)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sup>202)</sup> 이에 따라 1998년 11월 9일 호주 캔버라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서 CCSBT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시험 조업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에도 일본이 계속적으로 시험 조업을 실시하자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9년 6월 23일 외교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sup>203)</sup>

“일본은 CCSBT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관습법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호주는 이 시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83조 제1항에 부합하는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여기며, 또한 일본이 독자적인 시험 조업을 재개한 행동에 대해 그에 관련된 법적 이슈들에 대한 분쟁해결이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83조 제2항에 따라 분쟁해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은 구속력 있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라고 생각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일본은 1999년 6월 23일자 외교 공문을 통해 CCSBT 규정하의 중개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왔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가 일본이 시험 조업을 중단해야만 CCSBT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자,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자국이 중개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호주와 뉴질랜드가 거절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호주와 뉴질랜드가 제28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제15부 제1절에 따른 분쟁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04)</sup>

201) 김선표 외 2인, 전계서, 19면.

202) 상계서, 22면.

203) 상계서, 23면.

## 다. 재판소 판결

### 1) 잠정조치와 관련한 국제해양법재판소 명령

호주 및 뉴질랜드의 잠정조치 명령 요청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CCSBT가 아닌 중재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일응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205)

48. 유엔해양법협약 제64조, 제116조-제119조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은 자원보존과 최적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직접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49. 고도회유성 어족은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남방참다랑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50. 1993년 CCSBT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행위와 또한 비회원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사항 준수 정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51. 1993년 CCSBT가 협약 당사국간에 적용된다는 사실은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호소 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55. 재판소는 CCSBT가 당사국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57. 분쟁 당사국간의 협상 및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들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1993년 CCSBT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이러한 협상 및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0.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소진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을 경우 제15부 제1절에 따른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61. 분쟁 당사국들이 제시한 주장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따른 제도가 개시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62. 중재재판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응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04) 상계서, 23면.

205) *Southern Bluefin Tuna Case*, Order, paras. 48-62.

따라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제15부 제1절의 선결적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였기 때문에 중재재판소의 일응관할권이 성립, 따라서 잠정조치 명령을 내린다고 결정하였다.

## 2) 중재재판소의 본안판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요청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된 후에 워싱턴 DC에 있는 World Bank의 본사에서 2000년 5월 7일 이 사건에 대하여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중재재판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장<sup>206)</sup>에 동의하였지만, 이 사건을 논의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다. 즉, 분쟁 당사국들은 총 어획량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여기에는 일본의 어획량과 차후 계획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은 이 사건의 방향을 잡아주진 못하지만, 대신 제286조 제2항을 근거로, 이 분쟁에서 제15부 제1절에 속하는 제281조 제1항과 제283조가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과 CCSBT는 국제법에 따라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분쟁은 CCSBT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CCSBT 제16조와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 제1항을 고려하였다.<sup>207)</sup>

중재재판소는 일본에 반하여 호주와 뉴질랜드가 요구한 본안에 대하여 중재재판소는 재판을 다룰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유로 본 사건이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고, 세 국가가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에 의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제16조에는 분쟁 당사국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중재재판소가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재판소가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다수 의견으로부터

206) 남방참다랑어 사건은 법적인 분쟁으로 심각하게 감소한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련된다고 있다. 또한 협약 제15부에 따라 중재재판소 관할권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207) *Southern Bluefin Tuna Case,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paras. 41-49.

Kenneth Keith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개별의견에서 CCSBT의 제16조 제1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sup>208)</sup>

중재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내린 잠정조치 명령도 철회되었다.

## 2. 영국·아일랜드의 혼합이산화연료 제조공장 사건

###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영국핵연료공사(BNFL)가 아일랜드해를 가운데 두고 아일랜드와 마주보고 있는 셀라필드(Sellafield) 원자력산업단지에 폐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혼합이산화연료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이다. 아일랜드는 혼합이산화연료 제조공장 가동으로 인한 아일랜드해 오염과 방사능물질과 핵폐기물 운송과정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자 영국과 외교교섭을 실시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후, 아일랜드는 2001년 10월 25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될 중재재판소에 자국과 영국 간의 문제를 다루어 주도록 요청<sup>209)</sup>하였다. 이는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재판소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sup>210)</sup>

아일랜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반폐쇄해 국가의 협력 의무와 관련이 있으며 제197조에 따라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전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년 11월 9일 아일랜드는 본안판결에 앞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5항에 따라 혼합이산화연료 제조공

208) *Ibid.*

209) (1) 영국은 아일랜드와 함께 아일랜드해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협력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Mox plant가 건설되기 이전에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의 국제적 이동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아일랜드해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일랜드해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필요한 모든 예방, 감소, 통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10) 아일랜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3조, 제207조, 제211조, 제13조를 근거로 영국은 아일랜드해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Natalie Klein, *op. cit.*, p. 45.

장의 운영을 중지시켜 줄 것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하였다.<sup>211)</sup>

### 나. 재판의 진행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사건에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결조건에 속하는 내용인 제282조와 제283조에 대한 논의 및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우선, 제282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두 국가가 유럽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당시,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행하기 이전에 당사국들은 제282조의 잠재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해 요구하였다. 이 범위에는 유럽연합조약(EC Treaty)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수단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sup>212)</sup> 따라서 두 국가가 속한 유럽공동체<sup>213)</sup>에 의거하여 1992년 북동대서양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Ospar 협약의 중재제도 또는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 국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다.

제283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아일랜드가 요청한 잠정조치 명령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중재재판소가 일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 국간에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다.<sup>214)</sup>

이 사건은 제15부 분쟁해결제도에 따른 중재재판소에서 본안 판결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일랜드의 잠정조치 요청을 수용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

211)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Ⅱ』(서울 : 해양수산부, 2004), 486면.

212) Natalie Klein, *op. cit.*, p. 48.

213) 과거에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3년에 들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탄생하였다. 유럽연합을 창립한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은 또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안전·정의’를 공동의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통합 성과인 공동체법 및 관행의 집적(acquis communautaire)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발전시키는데 창립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당시에 사용되었던 유럽공동체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214) 해양법포럼, 전게서, 486면.

조치 명령을 내렸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가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15)</sup>

## 나. 당사국주장

### 1) 임의적 수단의 선택에 대한 당사국 주장 대립

영국은 유럽공동체 회원국 간에 발생한 분쟁의 경우 제282조 규정에 의하여 제287조에 규정된 재판소 관할권 성립이 제한되며, 이러한 분쟁은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의 권한 하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아일랜드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상 유럽공동체 권한의 범위에 속하며, 이것에 대하여 유럽연합조약은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유럽공동체와 상의하도록 권고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유럽 공동체사법재판소가 이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보유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sup>216)</sup>

아일랜드는 영국의 주장에 반박하여, 유럽공동체는 “해상운송, 선박안전, 해양오염의 예방과 관련하여... 공동체는 오로지 협약 내 이러한 조항 또는 채택된 법률적 수단의 범위 내에서만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다. 이것은 공동체에 의해 규정된 공통의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규정이 존재하지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특히 공동체 조항들이 최소 기준을 확립한 사건에서, 구성원들은 공동체가 이러한 경우에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편견 없이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다. 즉, 이러한 권한은 회원국들에게 그대로 존속한다.”<sup>217)</sup> 고 보기 때문에 유럽공동체는 문제를 다룰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sup>218)</sup> 따라서, 아일랜드는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처리할 수 없으며 더욱이 중재재판소에 제

215) Donald R Rothwell · Tim Stephen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xford and Portland, Oregon : Hart Publishing, 2010), p. 447.

216) Natalie Klein, *op. cit.*, p. 48.

217)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htm#European%20Community%20Declaration%20made%20upon%20formal%20confirmation](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htm#European%20Community%20Declaration%20made%20upon%20formal%20confirmation)

218) Natalie Klein, *op. cit.* p. 49.

소되어 문제가 다루어지기 전에 다른 재판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sup>219)</sup>

## 2)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에 대한 당사국 주장 대립

제283조의 신속한 의견 교환의무와 관련한 양 국간의 의견 대립은 아일랜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한 상황과 관련하여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가 일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아일랜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sup>220)</sup>

“이 분쟁 속에서 제283조 제1항의 목적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일랜드는 영국이 행한 수 많은 사례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영국은 이에 대해 불충분하게 반응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일랜드가 보낸 항변서에 대해, 영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sup>221)</sup>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일랜드는 국가 문서로부터 특정 정보에 대해 요청하는 언급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Mox Plant 사건에 대한 경제적인 회담을 요청하였다. 아일랜드는 영국에게 교섭 또는 다른 평화적 수단을 목적으로 어떠한 의견 교환을 하자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현재 아일랜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고 있다. 실제, 아일랜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즉, 아일랜드는 영국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와는 반대로 아일랜드가 요청한 교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했기 때문에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22)</sup>

---

219) *Ibid.*, p. 46.

220) *The Mox Plant Case*, Statement of Claim, para. 36.

221) *Ibid.*, Written Response, para. 188.

222) *Ibid.*

## 다. 재판소 명령

### 1) 제282조와 관련한 재판소 결정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조치 명령을 신청한 아일랜드의 견해를 수용하여, 당사국이 사전에 조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기관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비록 이러한 조약에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사한 내용 또는 의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도,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당사국이 선택한 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sup>223)</sup>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들의 별도 의견에서는 제282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Nelson 재판소 부소장과 Treves재판관은 “제282조는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지역적·양자적 협정의 권한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24)</sup> 그러나 Nelson 부소장은 제282조는 협약 제15부 제1절이 기능하는 역할의 배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25)</sup>

“협약 제15부 제1절의 전반적인 목적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반드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협약 내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282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만 하며, 제281조와 제282조에 의해 형성된 장애요소는 오로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피할 수 있다”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구두 성명서를 살펴보면, Mensah재판관은 성명서에서 영국이 제시한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에 의해 해결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sup>226)</sup>

---

223) Natalie Klein, *op. cit.*, p. 46.

224) *The Mox Plant Case*, Separate Opinion of Judge Treves, para. 3, Separate Opinion of Vice President Nelson, para. 2.

225) *Ibid.*, Separate Opinion of Vice-President Nelson, paras. 2-6.

226) *Ibid.*, Statement of the President, para. 9.

“유럽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은 이 사건에서 행사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제기되는 몇 가지 또는 전체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다. 만약 공동체 국가들 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의 독점적 권한 하에서 협약의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제282조의 성격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소는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가 이 분쟁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재판기관과 동일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두 재판소가 최종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두 사법적 기관은 서로 상호적인 측면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며, 두 기관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결정의 요청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sup>227)</sup>

## 2) 제283조와 관련한 재판소 결정

아일랜드가 요청한 잠정조치 명령과 관련하여 제283조에 따른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양국 주장의 대립에 대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sup>228)</sup>

54. 영국의 주장을 고려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83조의 신속한 의견 교환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교섭 또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56. 영국의 주장을 고려하여, 아일랜드와 영국간의 외교 서한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언급하는 분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7. 영국의 주장을 고려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83조에 대한 의견 교환에 대한 요청은 아일랜드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58. 아일랜드의 주장을 고려하여, 1999년 7월 30일 이전에 쓰여진 서한

227) *Ibid.*, Order, para. 27.

228) *Ibid.*, paras. 54-60.

에서 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심을 도출해냈고, 분쟁의 회부와 관련한 의견교환에서,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59. 아일랜드의 주장을 고려하여, 아일랜드는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제소하였으나, 영국은 Mox Plant의 허가 중지 또는 관련된 국제 운송의 중지를 즉각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60. 재판소에 관점을 종합하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하였을 때, 의견 교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속에서 당사국들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후에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냈다면 즉, 의견 교환 의무를 이행한 후에 해결수단에 대해 선택 또는 분쟁의 실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신속한 의견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 Michael Wood재판관은 개별 의견서를 통해 “만약 재판소가 어느 정도까지 주관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이 사건을 비난 받을 수 있다. 별도 의견에서 나는 제출된 사실에 기초하여 제60번 Order 이유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283조는 당사국들에게 합의에 도달하라고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며, 그것은 간단하게 그 당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에 대해 의견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이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견교환을 계속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관할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29)</sup> 또한 아일랜드가 요청한 잠정조치 명령과 관련하여 영국의 Mox Plant가동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아주 경미하며 해양환경과 아일랜드의 권리에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야기될 가능성도 없다고 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영국의 서약과 짧은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아일랜드가 청구한 것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국가들의 국제협력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반국제법의 근본원칙이라고 보아, 이러한 제도에서 비롯되

229) *Ibid.*, paras. 58-62.

는 몇 가지 의무를 양국에게 부과하였다. 즉, Mox Plant 가동에 따른 위험과 영향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위험과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다.<sup>230)</sup>

### 3.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조호르해협과 주변에서의 간척사건

#### 가. 사실관계 및 재판의 진행

이 사건은 ‘싱가포르 조호르해협 주변의 간척사업에 관한 사건’으로 불리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흐르는 해협인 조호르 해협에서 싱가포르가 추진 중인 간척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다. 싱가포르가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조호르 해협의 동부에 위치하여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해협, 남중국해 등과 연결되어 양국의 중요한 해운 항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의 해군기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어민의 실질적인 어업활동 지역으로 연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맹그로브는 중요한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sup>231)</sup>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행하고 있는 간척사업이 해양환경의 피해와 자국의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하였다.<sup>232)</sup>

말레이시아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싱가포르는 초기의 간척사업은 수심이 얕은 싱가포르 쪽 연안에서 실시한 매립공사로 이 해협에 실질적인 피해를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2001년부터 시작된 공사들은 그 규모가 크고 해협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로써 특히 2002년부터는 싱가포르가 보다 깊은 수심지역에 대한 대규모 매립지 공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매립공사가 추진됨에 있어 말레이시아에 어떠한 협의

230) 해양법포럼,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Ⅱ』, (서울: 지인북스, 2010), 487-488면.

231) 최수정, “해양법판례연구-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제233호 (2004), 101-102면.

232)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Malaysia, ITLOS, 4 September 2003, para. 1.

(consultation)나 정보제공(no evidence or reports on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33)</sup>

이 사건은 강제적 분쟁해결 방법이 중재재판소로 결정된 상태에서 동 재판소가 구성되는 기간 동안 요청된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을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말레이시아가 제기한 해양환경 오염문제 및 그 권리 침해가 문제된 사건이다.<sup>234)</sup>

#### 나.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와 관련한 당사국 주장 대립

말레이시아의 잠정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하려면 일응관할권 (prima facie)을 보유해야 하는데 재판소가 관할권을 보유하여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에 제283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싱га포르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를 명령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두 국가는 2003년 8월 13일, 14일 싱가포르에서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였고, 이것에 합의하였지만 말레이시아가 이 교섭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제283조에 위반되어 말레이시아의 잠정조치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35)</sup>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2003년 7월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 의해 협약의 제7부속서에 따른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의 고위공무원 들이 모여 회담을 개최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싱가포르는 이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였으며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36)</sup>

#### 다. 제283조와 관련한 재판소의 결정 내용

233) *Ibid.*, Order, ITLOS, 10 September 2003, para. 22.

234) 최수경, 전제논문, 113-114면.

235)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Order, paras. 42-43.

236) *Ibid.*, paras. 39-40.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주장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제283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sup>237)</sup>

33. 싱가포르가 주장한 내용을 검토하면, 제283조의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쟁의 해결제도인 교섭 또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
36. 제283조의 의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며, 분쟁 당사국간에 적용 발생과 관련하여 이견은 없다.
39. 말레이시아가 주장한 내용을 검토하면, 2003년 7월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 의해 협약의 제7부속서에 따른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것은 조호르 해협에서의 싱가포르 간척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양국간의 외교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의 고위공무원들이 모여 회담을 개최하자고 요청하였다.
40. 말레이시아는 양국간의 회담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가 요청한 고위 공무원 회담 제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절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42. 싱가포르가 언급한 내용을 검토하면, 말레이시아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 재판소에 분쟁을 제소하겠다는 통지와 성명서를 받고난 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2003년 8월 13일, 14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였고, 이것에 합의하였다.
43. 싱가포르는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말레이시아는 돌연 2003년 8월 13일, 14일에서 이루어진 교섭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회담의 선결조건으로써 간척사업의 즉각적인 중지를 주장하였다.
45. 분쟁 당사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났을 경우 의견 교환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47.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협약 제15부 제1절에 따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을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는 그 절차의 의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개시’되며 ‘분쟁 당사국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

237) *Ibid.*, paras. 33-47.

없다고 종결난 경우, 의견 교환을 계속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8일자 명령에서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가 일응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였다. 제283조에 규정된 의견교환 의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의견교환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의견교환을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sup>238)</sup> 재판소의 이러한 의견은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당사국이 분쟁해결 가능성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부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수용하여 관할권을 인정,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싱가포르의 간척사업이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잠정조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sup>239)</sup> 다만, 싱가포르의 간척사업이 말레이시아의 해양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독립 전문가그룹을 통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의하도록 명령하였다.<sup>240)</sup>

## 제4절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사전적 한계

### 1.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에 대한 엄격한 해석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국은 임의적 수단에 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 당사국간 즉, 제소국과 피소국간에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기준에 대한 입장 및 판단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어느 한 분쟁 당사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한 경우 당사국 간 교섭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287조에 규정된 재판

238) *Ibid.*, para. 47.

239) *Ibid.*, para. 94.

240) 최수정, 전계논문, 116면.

소에 분쟁을 제소한다. 이에 대해 제소국에 의해 분쟁이 재판기관에 부탁되었다고 통고를 받은 피소국은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국간에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분쟁 당사국간에 신속한 의견교환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재판소가 이것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사례로 든 세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재판소는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다른 판례들을 살펴볼 경우, 북해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로 정의하였고,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교섭을 통한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로 보았다.<sup>241)</sup>

Railway Traffic 사건에서도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간 의견교환 의무는 분쟁 해결에 도달할 의무가 아닌, 합리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242)</sup> 즉, 두 사건 모두 실질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 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로 보았다. 그러나 앞의 세 사건 모두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으로 인하여 분쟁의 해결 및 의견교환을 연관시켜 본래의 의미보다 더 엄격하고 과도하게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정도 및 범위를 판단함으로써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분쟁 당사국에게 과도한 의견 교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결적 조건인 만큼 이것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본래의 의미보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고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41) Myron H. Nordquist, *op. cit.*, p. 30.

242) *Ibid.*

## 2. 유엔해양법협약과 분쟁 당사국이 체결한 협정과 충돌

제282조는 분쟁 당사국간에 사전에 체결한 협정이 존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남방참다랑어 사건과 혼합이산화연료 제조공장 사건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 제도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아닌 당사국간 체결한 협정도 존재하고 그 제도 안에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분쟁 당사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해결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법정 쇼핑(Forum Shopping)에 관한 문제 및 두 해결 수단 간의 충돌과 관련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 제소국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소송 제도가 개시되길 희망하고 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협약상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43)</sup>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15부의 분쟁해결제도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간 충돌에 관하여 중재재판소는 남방참다랑어사건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특히, 중재재판소는 본안판결에서 자신들의 관할권을 부인함과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도 부인하여 잠정조치 명령 또한 철회하였다. 재판소는 당사국간에 체결한 협정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배제하고 있고,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권을 부인하였는데 제소국이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후에 혼합이산화연료 제조공장 사건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우려하여 관할권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의 재판소 판결은 재판소가 스스로 자신들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당사국간에 체결한 협정을 과도하게 존중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 3.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부재

243) Donald R Rothwell · Tim Stephens, *op. cit.*, p. 447.

제281조에는 분쟁 당사국들이 선택한 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당사국간의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 협약의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1조는 제283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제281조에 따라 분쟁의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앞의 세 사건 모두 제소국은 그들이 선택한 임의적 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길 희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소국은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적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소 관할권에 반대하였다. 재판소의 관할권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판소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prolong, intense, serious' 로만 언급을 하고 있어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한다. 즉,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분쟁해결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하여, 다른 국제협정에서는 분쟁 해결의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을 원용, 제281조 제2항에 그러한 내용을 두었지만 앞의 세 사건 모두 분쟁 당사국들은 시간적 제한을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조항을 활용하지 않았다. 분쟁 당사국이 시간적 기준을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판소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판결문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제4장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상 한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제15부 제1절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게 된다.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란, 일방 당사국의 제소에 의하여 피소국이 당연히 해당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성을 갖는 여러 종류의 법원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초반부터 등장하였다. 당시 미국이 해저위원회에 제출한 초안 제 9조에는 중재재판소, 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가 열거되어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가 규정되게 되었다.<sup>244)</sup> 즉,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완성된 협약은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의 해양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분쟁들은 구속력 있는 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강제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sup>245)</sup> 따라서, 국가들은 협약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재판소 및 법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강제적 관할권을 수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존재하였다. 1974년 제2차 회기에서 엘살바도르의 Reynaldo Galindo Pohl 대사는 “영토 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배제되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비준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46)</sup> 따라서,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등 국가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협약 제298조에 따라 당사국들이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한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244) 박찬호, “국제해양법법원을 통한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제6권(1997), 257면.

245) 김영구, 전계논문, 50-51면.

246) Myron H. Nordquist, *op. cit.*, p. 87.

또한, 예외 선언을 하지 않아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해양과학조사나 어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연안국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 규정은 과거에 공해에 속한 부분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자 이 구역에서 독점적 이익을 취하려는 연안국과 과거에 누렸던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와의 충돌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되는 분쟁들을 살펴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해양 질서를 혼란시키는 분쟁의 대부분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의 제한 및 예외 조항들이 어떤 이유로 제정되게 되었는지 입법적 연혁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분쟁 해결에 있어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제1절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 및 예외의 제정 과정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제정되었고, 많은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러나, 회의의 초기 단계부터, 특정 분쟁의 경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제15부 제1절에 따른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초기 비공식그룹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 및 예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제출된 문서를 보면 현재 협약에 규정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 및 예외에 대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1974년 카라카스 회기 당시 비공식 작업그룹은 (1)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는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적용되어야 하며 (2) 특정 범주에

속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될 수 없고 (3) 특정 범주에 속하는 분쟁은 적어도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 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특정 범주에 속하는 분쟁으로 (a)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sup>247)</sup> (b) 역사적 만 또는 영해의 경계획정을 포함한 경계획정 분쟁 (c) 국제법에 따라 주권면제의 자격이 부여된 항공기와 선박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d) 군사적 활동에 관한 분쟁, 당사국이 합의에 따른 분쟁을 제안하였다.<sup>248)</sup>

1975년 세 번째 회기에서, 비공식교섭그룹은 추가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배제되는 분쟁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배제되는 분쟁에 대하여 국가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였다.<sup>249)</sup> 비공식단일교섭안 제4부에서 이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장은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 Amerasinghe 의장은 공동의장 이었던 호주의 Ralph L. Harry 대사와 함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특정 유형의 분쟁을 배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을 인정하였다. 너무 많은 분쟁들을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면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원래 목적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다른 국가의 권리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 제도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대표단들이 이 의견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고, 그들은 예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만약 예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면 각각의 내용들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50)</sup> 소련 또는 구소련 대표단은 “연안국의

247) 그러나, 비공식작업그룹은 연안국의 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248) Myron H. Nordquist, *op. cit.*, p. 87.

249) (a)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대신 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은 제외된다.

(b)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또한 역사적 만 및 권원을 포함한 분쟁, 이 분쟁은 지역적 또는 다른 제3자 절차에 의해 해결된다.

(c) 비상업적 활동에 참가하는 항공기와 정부선박을 포함하는 군사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활동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d)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다.

250) Myron H. Nordquist, *op. cit.*, p. 92.

재량권 행사로부터 발생한 분쟁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이 상당히 약화되고 다른 국가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 조항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슬란드의 Hans B. Andersen 대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개념을 약화시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환상에 불과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신,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항해, 상공비행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강제적 해결제도를 수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sup>251)</sup>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의장은 비공식단일교섭안 제4부의 수정안을 준비하였다. 그는 두 입장에 대한 중간적인 타협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미 수정안에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배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안국의 재량권에 관한 선택적 배제 내용을 생략하였다. 반면에,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배제되는 분쟁의 범위는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안국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즉, 의장은 어떠한 분쟁이든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배타적 관할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sup>252)</sup>

1976년 제5회기에서 비공식 총회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내용이 충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것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비공식단일교섭안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을 제4부의 두 번째 수정안 제17조와 제18조로 제정하였다.<sup>253)</sup> 그러나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두 조항이 유엔해양법협약 전체에 명시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강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제적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으며, 1977년 제6회기에서 제17조 및 제18조 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 후에 의장은 제17조가 제296조(현재 제297조), 제18조가 제297조(현재 제298조)가 된다고 발표하였다. <sup>254)</sup>

---

251) *Ibid.*, p. 93.

252) *Ibid.*, p. 94.

253) *Ibid.*, p. 97.

254) *Ibid.*, p. 98.

1980년 제9회기에서 의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였는데, 이것은 후에 비공식단일교섭안의 두 번째 수정안인 제296조 제2항의 내용과 통합되었다. 제9회기가 다시 재개되고, 제15부 내용에 대하여 재조정을 하였으며, 제296조에 규정되었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 규정이 제297조, 제297조에 규정되었던 선택적 예외에 대한 내용이 제298조로 이동하여, 이것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 및 예외에 대한 최종안이 되었다.<sup>255)</sup>

## 제2절 제297조에 따른 연안국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 거부 가능성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어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재량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연안국의 의사에 반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 공해로 여겨졌던 수역에서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행사한 과학조사 및 어로의 자유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재량권을 보호함으로써 인하여 제한되게 된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논의는 1978년 제7회기에서 시작되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이 문제는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5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형성되었다. 의장직을 맡고 있는 그리스의 Constantin A. Stavropoujou 대사의 주도 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sup>256)</sup>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해양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적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각종 관할권을 연안국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종전에는 공해에 속

255) *Ibid.*, pp. 100-105.

256) *Ibid.*, p. 100.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와 관할권을 제외하고는 공해상에 보장되고 있던 타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연안국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sup>257)</sup> 따라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어업은 강제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통제한다는 내용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다른 국가가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반대하였다.<sup>258)</sup>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한 대표단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분쟁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특정한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협안을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259)</sup> 해양국가와 연안국가의 주장을 절충하여 제297조의 매우 복잡한 조항을 제정하였지만, 각 항은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취하고 있진 않다. 제1항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안국이 항해·상공비행의 자유와 권리, 해저전선·해저관선 부설의 자유와 권리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데 있어 방해하거나 해양환경의 보호나 보전 등을 위반할 시에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하도록 하겠다.

제2항과 제3항은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과 관련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대상에 속하지만 특정한 경우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sup>260)</sup>

257) 신창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제2호(2005), 56면.

258) Myron H. Nordquist, *op. cit.*, p. 101.

259) John E. Noyes, "Compulsory Third-Party Adjudication and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1988-1989), pp. 686-687.

260) 이창위, “해양분쟁의 전개 및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 182면.

이 규정은 제298조와는 달리 서면으로 예외 선언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되지만 조정 위원회의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는 일반적으로 공해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sup>261)</sup> 또한, 제238조에서는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규정된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해양과학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에 기여를 하는데,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20세기 중반까지는 해양과학조사를 규제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해양과학조사가 자원탐사 및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과학조사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국제사회는 이를 규제하게 되었다.<sup>262)</sup> 이러한 규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거쳐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이 자유롭게 해양과학조사를 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거세졌다. 회의 당시, 개발도상국은 해양과학조사가 전형적으로 선진국에 의해서 이행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다른 국가의 해양과학조사 실시를 허가할 경우 자신들의 해양구역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한 계약이나 다른 절차의 허가

261)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공해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가 있다.

262) R. R. Churchill, *op. cit.*, p. 400.

관련하여 국가들과 교섭을 할 경우 우세한 위치를 차지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sup>263)</sup>

결과적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안하였다.<sup>264)</sup>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공해로 인정되었던 해양 구역에서 전통적으로 행사하였던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연안국이 통제하고 또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sup>265)</su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진행되는 당시 서로 상반된 두 의견을 다루면서 Amerasinghe의장은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제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한 분쟁을 배제 또는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충돌 의견과 이행 의견 간 타협의 시도” 라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두 의견 간의 타협안인 특정초안을 해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독점적 권한에 따라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아닌 강제적 조정제에 따라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당시, 의장의 제안은 가장 적절한 타협안으로 여겨졌다.<sup>266)</sup>

1980년 제9회기에서 의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였고<sup>267)</sup>, 후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현재 제297조 제2항의 최종안이 되

263) Natalie Klein, *op. cit.*, p. 209.

264) *Ibid.*

265) *Ibid.*

266) Myron H. Nordquist, *op. cit.*, p. 91.

267) (a) 분쟁 당사국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분쟁해결수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이 절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국에게 다음의 경우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이러한 해결제도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i) 제246조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 행사

(ii) 제253조에 따른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b) 특정 조사계획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246조와 제253조에 의한 권리를 이 협약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국이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은 어느 한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84조 제3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5부속서에 따른 절차에 회부되어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제246조 제6항에 언급된 특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나 제246조 제5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연안국 재량권 행사를 문제삼지 않아야 한다.

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제246조와 제253조는 다른 국가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양과학조사의 목적에 반할 경우 이를 중지 및 정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재량권이 보호된다.<sup>268)</sup>

연안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국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또한 모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허가를 요청한 경우 동의해야 한다. 협약에는 통상적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246조 제5항에서 연안국이 해양과학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것을 통상적인 상황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안국은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반입을 수반하는 경우,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조, 운용 또는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 제248조에 따른 조사사업의 성질과 목적에 관하여 전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나 조사국이나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이전에 실시된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연안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 및 권리 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제246조 제5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이것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제외된다.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 동의에 관한 주권 및 재량권 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이 사전에 통보된 정보와는 다르게 수행되고 있는 경우, 해양과학조사사업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하여 제249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의 동의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 및 재량권 행사,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에 관한 연안국의 결정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은 따라서 강제적 분

---

268) Myron H. Nordquist, *op. cit.*, p. 103.

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연안국이 협약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국이 주장하여 발생한 분쟁은 강제적 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강제적 조정이긴 하지만, 실제 구속력은 없으며 문제의 핵심이 되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고적 의견만을 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행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연안국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에 대한 해양법질서는 급속하게 변모하였다. 풍족한 어업자원이 존재하는 연안으로부터의 200해리의 해역이 어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인 주권적 권한이 행사되는 해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sup>269)</sup>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어업관할권에 대한 연안국의 주장은 대부분 온건하여 어업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남획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어업자유의 원칙은 점차적으로 그 위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특히 1970년대 말부터는 대다수의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어업자유의 원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sup>270)</sup>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다른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sup>271)</sup> 생물자원의 잉여량에 대해서는 타국의 입어를 허용해야 한다.

즉, 연안국은 우선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해야 할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자국의 어획능력, 다른 국가의 잉여량 할당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

269) 최낙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해사법연구』, 제10권 제1호(1998), 192면.

270) 상계논문, 192-193면.

271)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2항.

용을 제한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롭게 어업을 행사했던 지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연안국의 결정에 따라 어획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분쟁을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제한시켜 달라는 제안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1978년 제7회기에서는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였고 두 입장을 절충하려 노력하였고, 연안국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다. 즉, 연안국의 의무 위반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았거나, 허용 어획량과 자국의 생물자원 어획능력 결정을 자의적으로 거부하였거나, 잉여분을 다른 국가에게 할당할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의한 강제적 조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류가 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즉, 회유성어종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분쟁이 공해상의 어업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할 것이고,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족의 관리와 관련된다고 하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 한편, 1995년 체결된 경계왕복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협약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와 대체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어업과 관련된 분쟁해결의 제한을 규정한 제297조 제3항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sup>272)</sup>

### 3.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제한에 관한 국제판례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 가. 사실 관계

이 사건은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토바고 간에 발생한 해양경계획정 분쟁

---

272) 박찬호, 전계논문, 261면.

으로, 2004년 2월 16일 바베이도스가 군도 국가인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상대로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으로<sup>273)</sup>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바베이도스의 어업권과 관련한 문제가 이 분쟁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두 국가는 대서양에 속한 대항국으로써 양 국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으므로 인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구역에 풍부한 어업자원 및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양 국가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주장을 펼치었다. 당시, 바베이도스는 중재재판소의 일방적 제소와 관련하여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총리가 두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 바베이도스를 초청하여 중재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제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74)</sup> 두 국가 모두 제297조에 따른 재판소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재판소가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두 국가 간에 경계획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면, 과거 이 구역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선언과 관련이 있다. 바베이도스는 1978년 2월 “해양경계 및 관할권의 확대를 위한 선언”을 선포하였는데, 그들의 영해 이원의 구역인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대 및 관할권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1986년 “군도국가 및 배타적 경제수역 선언”의 입장을 취하였고 군도국가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자 두 국가는 중복된 서부, 동부, 중부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및 카리브해에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5번의 교섭을 실시하였고, 등거리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구역의 남쪽에서 바베이도스의 날치 어업과 관련하여 4번의 교섭을 실시하였다.<sup>275)</sup>

## 나. 재판의 진행

273) *Barbados/Trinidad and Tobago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Press Release, *Arbitral Tribunal*, 11 April 2006.

274) “On the contention of Barbados that Trinidad’s Prime Minister Manning characterized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as intractable”.

275) *Barbados/Trinidad and Tobago*, Award, paras. 47-56.

비록 바베이도스의 일방적인 중재재판소의 제소가 문제되긴 하였지만, 그 후에 두 국가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인정하였다.<sup>276)</sup>

중재재판소는 총 세 가지의 문제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가지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였으며 한 가지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바베이도스의 어업 권한과 관련한 것이었다.

해양경계획정과 어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인가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양국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두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며 양국 간에 제15부 제1절의 선결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297조 제3항을 근거로, 자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어업분쟁을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자동적으로 배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베이도스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래의 목적은 자국의 어업활동에 관한 문제에 있으며, 두 국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기 때문에 제15부 제1절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따라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sup>277)</sup>

중재재판소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인정, 이 문제에 대한 복잡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재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재결에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제법에 기초하여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근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 다. 재판소 재결

###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바베이도스의 어업권한에 대한 문제를 결정해달라는 양국의 요청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제297조 제3항을 근거

---

276) Barbara Kwiatkowska, "The Landmark 2006 UNCLOS ANNEX VII Barbados/Trinidad and Tobago Maritime Delimitation (Jurisdiction&Merits) Award",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39 No. 3(2007), p. 583.

277) *Ibid.*, p. 585.

로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sup>278)</sup> 즉,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바베이도스의 어업은 경계왕래 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하였는데 재판소의 관할권 부재로 분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대신, 5명의 중재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두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sup>279)</sup>에 따라서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함으로써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재결을 내렸다.<sup>280)</sup>

### 제3절 제298조에 따른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의 선택적 예외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가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과 관련하여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재량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서 배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98조 역시 특정한 분쟁에 있어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협상과정 동안 많은 논란들이 제기되었으며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치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당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보(reservation)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몇몇 국가의 대표단들은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분쟁의 경우 제3자에 의한 재판기관에 제소될 수 없고, 이것은 어떠한 선언에 의하여 배제

278) It has no jurisdiction to render a substantive decision as to an appropriate fisheries regime to apply in water which may be determined to form part of Trinidad and Tobago's EEZ.

279) 1. 동일어족이나 이와 관련된 어종의 어족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이러한 연안국들은,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 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동일어족 또는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과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 기구를 통하여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80) *Barbados/Trinidad and Tobago*, Award, *dispositif* paras. 385.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분쟁들은 주로 해양경계 획정, 역사적 만 또는 권원, 군사 활동과 법 집행활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것들이었다.<sup>281)</sup>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분쟁의 구체적인 예외에 대한 제안은 1974년 분쟁해결에 관한 비공식작업그룹에 의해 초기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가들 간의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특정 범주의 분쟁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은 일괄타결(package deal) 방식에 의한 완전한 성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그 성격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282)</sup> 이에 반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배제로부터 찬성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으로 인하여 해결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sup>283)</sup>

## 1.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

### 가.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한 제298조 제1항 제(a)호의 논의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제74조, 제83조는 인접국 또는 대항국과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5부의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98조는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선택적 배제선언을 통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sup>284)</sup>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는 1974년 비공식작업그룹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경계 획정

281) Myron H. Nordquist, *op. cit.*, p. 109.

282) *Ibid.*

283) *Ibid.*

284) P. Chandasekhara Rao, "Delimitations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Settlement Procedures", in Thomas A. Mensah, ed, *Law of the Sea, Environmental Law and Settlement of Disputes*,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 877.

문제가 국가의 이익과 관련한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975년 제3차 회기에서 비공식작업그룹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배제시키고, 대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지역적 또는 제3자에 의한 제도에 따라 해결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sup>285)</sup>

당시에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지역적 또는 제3자에 의한 제도에 따라 해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제6회기를 거쳐 이 내용은 강제적 조정으로 변경되었다.<sup>286)</sup> 그러나, 연안국의 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데 이것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배제될 경우, 국제평화에 위협에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sup>287)</sup>

1978년 제7회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용하여,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인식됨에 따라 핀란드의 재판관인 Eero J. Manner 의장의 관리 하에서 7명의 교섭 그룹 및 별도의 하위 그룹이 구성되었다. 이 교섭그룹은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배제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의견을 제안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NG7의 의장은 분쟁해결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sup>288)</sup>

- (1)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 조정절차에 해결한 경우, 조정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2)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을 포함한 “혼합 분쟁”과 관련한 내용의 배제 강조
- (3) 협약의 발효 이후 또는 이전에 발생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문제
- (4)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당사국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거나 또는 구속

285) Myron H. Nordquist, *op. cit.*, p. 110.

286) *Ibid.*, p. 112.

287) *Ibid.*

288) *Ibid.*, pp. 120-121.

력 있는 양자 또는 상호협정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도입

당시에는 강제적 조정이 분쟁 당사국을 실제 구속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 제도가 협약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주로 나타났다. 제8회기에서 Eero J. Manner 의장은 교섭그룹에 의해 제출된 여러 제안으로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 다음의 타협안을 제안하였다.<sup>289)</sup>

“인접국 또는 대항국간의 해양경계획정 또는 역사적 만 또는 권원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분쟁 당사국이 배제선언을 하였으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분쟁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제284조 제3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5부속서에 규정된 조정에 분쟁의 회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대륙 또는 도서 영토에 관한 어떠한 주권적 권리 또는 다른 권리의 주장에 대한 결정으로부터는 배제된다. 조정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당사국은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합의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교섭이 조정위원회가 제출한 일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분쟁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제15부 제2절에 규정된 제도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제안은 협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적 조정제도가 완전히 배제되고, 협약 발효 이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적 조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분쟁의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시되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제도의 추가적 이행은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도 많은 국가들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의장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였고, 제298

---

289) *Ibid.*, p. 127.

조의 제목이 “선택적 예외”에서 “제2절의 적용에 대한 선택적 예외”로만 변경되었다.<sup>290)</sup> 제298조 제1항 (a) (i)호의 최종 문서에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제15조, 제74조, 제83조와 관련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제15부 제2절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허용하였고, 접속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에, 역사적 만 또는 권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조정에 따라 회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협약 발효 이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이 의무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sup>291)</sup>

#### 나. 강제적 조정제도를 통한 분쟁의 해결

제298조는 해양경계획정 분쟁과 관련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택적 예외 선언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조정에 분쟁을 회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로부터 완전한 배제는 협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분쟁의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협약의 발효 이전과 발효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sup>292)</sup> 협약 발효 이후에 발생한 분쟁이라도 다음에 속하는 경우 강제적 조정의 의무로부터 배제된다.

- (a) 혼합분쟁<sup>293)</sup>
- (b) 분쟁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분쟁<sup>294)</sup>
- (c) 분쟁 당사국을 구속하는 양자협정에 따라 해결된 분쟁

당시 혼합분쟁이 강제적 조정으로부터 배제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약간의

290) *Ibid.*, pp. 133-134.

291) *Ibid.*

292) Sheehan Anne, "Dispute Settlement under UNCLOS : The Exclusion of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University of Queensland Law Journal*, Vol. 24 No. 1(2005), p. 182.

293) 혼합분쟁(Mixed disputes)란,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영토주권 문제가 모두 관련되어 동시 고려가 필수적인 것을 말한다.

294) 당사국간에 중재 또는 사법적 결정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경우로 튀니지와 리비아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리비아와 몰타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분쟁이 있다.

의견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유엔해양법협약이 대륙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 및 다른 권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제2절에 규정된 강제적 제도는 혼합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sup>295)</sup> 또한, 혼합분쟁은 해양과 관련한 국가의 이익 뿐만 아니라 영토의 주권이라는 더 큰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한 이후에도 강제적 조정의 적용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sup>296)</sup>

강제적 조정으로부터 제외되는 위의 세 가지 경우와 관련하여, 분쟁이 협약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그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양경계획정의 경우, 오래전부터 국가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그것이 심화된 경우 분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공식그룹은 국제재판 및 관할권 규정을 참고하였고 분쟁이 발생한 시기, 이른바 결정적 기일의 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sup>297)</sup> 대표단들은 협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분쟁이 강제적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재량권에 기초하여 제시된 기준이 매우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강조하였다. 반면에, 협약 이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강제적 조정이 적용되는 것을 선호하는 대표단들은 과거의 분쟁이 다시 재개되거나 또는 영토 주권에 대해 다시 주장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던 조건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98)</sup>

분쟁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결정은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된 수 많은 사건에서 관할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분쟁 발생 요소에 대한 해석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연대순으로 살펴보거나 분쟁의 평소 상황을 살펴보았을 경우 그 표현과 관련하여 의견이 충돌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과 결정적 기일로부터 배제된 일자간의 관계를 확인해봄으로써, 결정적 기일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적 문제에 있어서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

295) P. Chandasekhara Rao, *op. cit.*, p. 890.

296) *Ibid.*

297) Myron H. Nordquist, *op. cit.*, p. 124.

298) *Ibid.*

취급된다. 결정적 기일에 대한 해석은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으며, 각각의 분쟁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sup>299)</sup>

## 2. 군사 활동 및 법 집행활동에 관한 분쟁

제298조 제1항 제(b)호는 군사활동 및 법 집행활동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회의의 대표단이 해군활동에 중점을 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각 국의 대표단은 해군 군함에 의한 활동은 사법적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군사기밀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다.<sup>300)</sup>

이 조항은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협약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유엔해양법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오로지 비상업적 활동에 관여하는 정부선박에 대해서만 이 내용이 적용된다.

군사활동 및 법 집행활동에 대한 초안은 1973년 미국이 해저위원회에 처음으로 제출하였으며 당시에는 “국제법 하에서 자격이 부여된 특정한 선박과 항공기가 이에 속한다.”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sup>301)</sup> 이 초안에 약간의 변경이 가해져서 1974년 분쟁해결에 관한 비공식작업그룹은 “국제법에 따라 주권면제가 인정된 선박과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은 배제가 허용된다.”의 내용으로 두 번째 회기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사항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어떠한 선박에게 주권 면제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여부로, 이 이론에 따르면 오로지 국내법원이 적용되며 또한 주권국가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다양한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선박은 국제재판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정되었고, 또 다른 내용인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도록 수정되었다.<sup>302)</sup>

1975년 제3회기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비공식작업그룹은 주권 면제에 관한 내

299) Sheehan Anne, *op. cit.*, p. 183.

300) Myron H. Nordquist, *op. cit.*, p. 135.

301) *Ibid.*

302) *Ibid.*

용을 생략하고, 군사 활동과 법집행활동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비상업적 활동에 관여하는 정부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군사 활동에 관한 분쟁 및 법 집행활동은 군사 활동으로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다.” 로 수정되었다.<sup>303)</sup> 이 내용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여한 국가 대표단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뉴질랜드가 있다. 뉴질랜드 대표단은 군사적 활동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 반대하였고 정부 선박과 항공기는 국가 관할권 행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면제되어왔고, 국제 사법권으로부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른 대표단들은 뉴질랜드처럼 반대 의견은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하였다.<sup>304)</sup>

제6회기가 진행되기 이전에 열린 비공식 논의에서, 군사 활동 조항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예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군사 활동과 유사한 군사 활동 간에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군사 활동에 관한 것으로, 비상업적 활동에 관여하는 정부선박과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 집행활동은 주권의 행사 또는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로 수정되었다.<sup>305)</sup>

제298조 제1항 제(b)호는 국가가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한 경우 해양경계획정 분쟁과는 다르게 강제적 조정을 통한 해결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배제 효과가 절대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3.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는

303)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those by government vessels and aircraft engaged in non-commercial service, but law enforcement activities pursuant to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considered military activities.” 그 이후, 이 내용에 대하여 Amerasinghe 의장은 "government"를 "Government"로 수정, "but" 대신 "it being understood that", "this convention" 대신 "present convention" 으로 수정하였다.

304) Myron H. Nordquist, *op. cit.*, p. 136.

305) *Ibid.*, pp. 135-137참조.

## 분쟁

유엔해양법협약에 제298조 제1항 제(c)호의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안은 1975년 제3번째 회기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비공식작업그룹에 의해 제출되었다. 당시에 이 그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또는 상황으로,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협약에 규정된 어떠한 기능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 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을 제출하였다.<sup>306)</sup> 당시, Amerasinghe 의장은 그가 제출한 초안에서 이 내용을 포함하여 비공식단일교섭안 제4부 제18조 제2항 제b호에 규정하였는데, “또는 상황으로 (or situation)”의 문구는 생략하였다. 의장은 이 단어가 매우 모호하고 막연하다고 여겼으며, “분쟁”만을 규정함으로써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조항과 관련하여 여러 대표단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네덜란드 대표단은 “이 조항이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이 조항은 유엔헌장 제36조와는 반대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제 그들의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에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sup>307)</sup> 즉, 유엔헌장 제36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정제도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권고를 함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내용이기에 상반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sup>308)</sup>

네덜란드 대표단 뿐만 아니라 독일 대표단은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준하는 당시, 이 조항의 배제는 국가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이 조항이 유엔의 안전 체제를 위태롭고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09)</sup>

---

306) *Ibid.*, p. 138.

307) *Ibid.*

308) *Ibid.*

309) *Ibid.*, p. 139.

독일 대표단의 주장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하여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들의 권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단지 어느 한 국가의 배제선언으로 인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sup>310)</sup>

네덜란드와 독일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Amerasinghe 의장은 이 내용을 수정하였지만, 1977년 제6회기에서도 이 조항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의해 부여받은 기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한 절차를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에 관한 것으로 그 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sup>311)</sup>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에 규정된 수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의 내용과 유사한 표현은 유엔헌장 제12조<sup>312)</sup>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회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유사하다.<sup>313)</sup>

최종문서에는 초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present convention"을 "this convention"으로 대체하였을 뿐 위의 조항이 최종 제298조 제1항 제(c)호로 규정되었다. 이 조항도 제298조 제1항 제(b)호와 마찬가지로 강제적 조정에 대한

310) *Ibid.*

311) *Ibid.*

312)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중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항을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유엔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고한다.

313) Myron H. Nordquist, *op. cit.*, p. 139.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배제 효과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14)</sup>

#### 4.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배제선언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는 당사국들에게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한 경우 특정한 범주에 있는 분쟁들을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들은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제298조에 명시된 분쟁들에 대하여 제2절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선택적 예외 선언은 제15부 제1절에 규정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일반적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sup>315)</sup> 또한,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라도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제298조에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의 선택적 예외의 선언 또는 철회 통지의 정확한 일자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대신, 유엔사무총장에게 선택적 예외의 선언이나 철회의 통지를 기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무총장이 이를 수용한 날짜가 선언 및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16)</sup>

제298조 하에서 허용되는 선언들은 첫 번째, 인접국 또는 대항국간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에 있어서 해양경계획정분쟁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만 또는 권원과 관계된 분쟁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국가들은 비상업적 활동에 관여하는 정부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군사 활동 및 법 집행활동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강제적 제도로부터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하에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동반하는 강제적 제도로부터 배제된다.

314) *Ibid.*

315) Natalie Klein, *op. cit.*, p. 227.

316) Myron H. Nordquist, *op. cit.*, p. 140.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예외의 효과는 상호적이다. 즉,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 상대방으로 하는 분쟁으로서 제외된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분쟁을 그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이 협약의 제도에 회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제외의 선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17)</sup>

< 표 4 >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적 예외선언을 한 국가 현황<sup>318)</sup>

State	Optional exceptions to applicability of Part XV, Section, of the Convention
Angola	제298조 제1항 (a)
Argentina	제298조 제1항 (a), (b), (c)
Australia	제298조 제1항 (a)
Belarus	제298조 제1항 (b), (c)
Canada	제298조 제1항 (a), (b), (c)
Cape Verde	제298조 제1항 (b)
Chile	제298조 제1항 (a), (b), (c)
China	제298조 제1항 (a), (b), (c)
Cuba	제297조, 제298조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불허
Denmark	제298조 중재재판소 관할권 불허
Ecuador	제298조 제1항 (a), (b), (c)
Equatorial Guinea	제298조 제1항 (a)
France	제298조 제1항 (a), (b), (c)
Gabon	제298조 제1항 (a)
Ghana	제298조 제1항 (a)

317) 신창훈, 전제논문, 10면.

318) [http://www.un.org/Depts/los/settlement\\_of\\_disputes/choice\\_procedure.htm](http://www.un.org/Depts/los/settlement_of_disputes/choice_procedure.htm) 를 참조하여 재정리 (검색일자 : 2012. 11. 12)

Buinea-Bissau	제297조, 제298조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불허
Iceland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
Italy	제298조 제1항 (a)
Mexico	제298조 제1항 (a), (b)
Montenegro	제298조 제1항 (a)
Nicaragua	제298조 제1항 (a), (b), (c)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만 수용
Norway	제298조 중재재판소 관할권 불허
Palau	제298조 제1항 (a)
Portugal	제298조 제1항 (a), (b), (c)
Republic of Korea	제298조 제1항 (a), (b), (c)
Russian Federation	제298조 제1항 (a), (b), (c)
Slovenia	제298조 중재재판소 관할권 불허
Spain	제298조 제1항 (a)
Thailand	제298조 제1항 (a), (b), (c)
Trinidad and Tobago	제298조 제1항 (a)
Tunisia	제298조 제1항 (a), (b), (c)
Ukraine	제298조 제1항 (a), (b)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제298조 제1항 (b), (c)
Uruguay	제298조 제1항 (b)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많은 국가들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국가의 주권적 이익과 관련한 특정 범주의 분쟁에 대해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선택적 예외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이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많은 점을 볼 수 있으며 배제선언을 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에 대한 선택적 예외 선언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국가들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선택적 예외 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5장 결 론

해양의 이용에 관한 충돌은 인류가 해양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용한 때로부터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단순히 해양 자유와 해양 영유 이론의 충돌에서 발생하였던 분쟁이 현재에는 해양 자원에 대한 다툼과 해양 수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단순한 유형의 해양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현재는 해양 수역이 세분화되고 그 수역 뿐만 아니라 해저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힘으로 인하여 복잡한 유형의 해양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양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위협을 초래하는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과정을 통하여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분쟁해결제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구성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국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사법적 기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선호하는 임의적 제도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임의적 제도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 네 가지 유형의 재판기관을 두어 가장 선호하는 분쟁해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또한, 연안국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쟁의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도록 하였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직접적으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국가에게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다양한 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를 비준하였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에는 분쟁해결제도가 제1차,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제도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꺼리는 상당수 국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다보니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그 문제가 나타난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해양 관할권의 확보 및 이에 따른 자원 확보의 다툼으로 인하여 국가간 해양 분쟁이 복잡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국 의견의 과도한 존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재량권 보호, 국가의 주권적 이익을 고려함으로 인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데 있어서 그 한계점이 나타난다. 현재, 국제재판소 및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이 제소되어 해결되는 사례는 1년에 한 건 정도이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소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러한 재판소들은 해양 분쟁 뿐만 아니라 영토 및 다른 국제적인 요소와 관련된 분쟁 역시 해결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을 둘러싼 특수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된 분쟁을 살펴보면 얼마만큼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실제 적용이 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에 회부되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된 분쟁의 대부분도 해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분쟁이 아니라 잠정조치 및 선박·선원의 신속한 석방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유엔해양법협약 내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진보적인 절차라고 평가 받고 있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실제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는 데에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과정 내에서 많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도록 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상 한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 분쟁 당사국은 임의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의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의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제판례 상에서 그 사전적 한계가 나타난다.

첫째, 제283조에 따른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에 대하여 재판소가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인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지연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석상의 논란 역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의견교환 의무의 판단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간 해결수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분쟁해결과 연관지어 과도하게 해석함으로써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내 분쟁해결제도와 분쟁 당사국이 체결한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어느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분쟁 당사국이 체결한 협정을 과도하게 존중함으로써 인하여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일본과 호주·뉴질랜드간 발생한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호주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중재재판소의 일응관할권을 인정,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안 판결에서 중재재판소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일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잠정조치 명령 역시 취소하였다. 동 사례를 통하여 재판소가 과도하게 당사국이 체결한 협정을 존중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분쟁 당사국간 해결수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한 점이다. 즉, 분쟁 해결 도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판소가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하여 문제가 나타난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시간적 기한을 설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해양 분쟁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분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하여 재판소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가능성에 대하여 재판소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에는 국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그들이 체결한 협정을 존중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

용을 반영하여 분쟁해결제도가 제정되었지만 과도하게 국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임의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제정하고 또한 임의적 수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지연되고, 사전에 차단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적 조건을 이행한 후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및 제298조에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의 제한 및 선택적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로써 실제 발생되고 있는 상당수의 해양 분쟁에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배제 가능성은 다음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점에서 비롯되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 새롭게 인정되었는데 과거 공해로 인정되었던 수역에서 국가에게 인정된 어업 및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권한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허용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가가 반대하였다. 과거에는 식민지에 속하였던 연안국이 독립함으로써 많은 연안국이 연합하여 상당한 세력을 결성하고 행사하였으며,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에는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둘째, 국가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고 일괄타결(package deal)방식을 채택한 점에서 배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국가의 이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꺼리는 국가들이 많았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국가의 주권적 이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해결될 경우 많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의 제한 및 예외 조항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상충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양 분쟁의 대부분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의 제한 및 예외에 속하는 분쟁이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가장 최종적인 수단이며 분쟁 당사국을 구속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국가의 주권 보호 및 연안국 권리의 과도한 존중으로 인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에 대한 사전적 한계 및 제한 및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실제 이 방안이 적용되기는 어려울뿐더러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지만, 2006년 4월 20일에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 동 배제 선언을 통하여 주변 국가와 발생 가능한 분쟁 중에서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및 법 집행활동, 유엔헌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행사의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에서 해양 환경의 오염 및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한 및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과 양안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양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의 내륙으로부터 대부분 처리되지 않은 채로 생활배수, 공장배수 등이 직접적으로 해안으로 유입되고 중국내 처리율이 10%미만임에 따라서<sup>319)</sup>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잦은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나미를 통해 상당수의 해양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었고 2011년에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었는데, 당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과 관련하여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sup>320)</sup> 해양 환경의 오염 및 손상과 관련하여 국가는 인접국가에게 그와 관

319) <http://blog.daum.net/justicearmy/7645541> (최종검색일자 : 2012. 11. 28)

런된 내용을 사전 통보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 198조에 따른 위반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접국인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 및 배제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 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 어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 역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어업을 하는 경우 일본이 그들이 수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어업을 한다고 우리나라 어선을 나포하는 경우에도 분쟁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또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적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제한 및 예외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철저하고 명확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며,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20)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국제법적 대응”, 『경향신문』 (2011. 04. 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1944425&code=9903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1944425&code=990303), (최종검  
색일자 : 2012. 11. 28)

## 【 參 考 文 獻 】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 삼영사, 2011.

김선표·홍성걸·정성희, 『남방참다랑어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보고서, 1999.

김종두, 『동아시아 해양분쟁』, 서울 : 문영사, 1997.

김현수, 『국제해양법』, 서울 : 연경출판사, 2007.

박찬호·김한택, 『국제해양법』, 서울 : 경제경영, 2011.

이석용, 『국제해양분쟁해결』, 대전 : 도서출판 글누리, 2007.

이정환·최재선·김민수, 『해양·정책·미래』, 서울 : 블루&노트, 2010.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제6판』, 서울 : 도서출판 두남, 2006.

해양법포럼,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Ⅰ』, 서울: 지인북스, 2010.

\_\_\_\_\_,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Ⅱ』, 서울: 지인북스, 2010.

\_\_\_\_\_,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Ⅱ』, 서울 : 해양수산부, 2004.

#### 2. 논문

권문상,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9.

김민중, “한국의 원양어업관련 국제분쟁 사례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4권 제1호, 2003.

김부찬,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분쟁해결제도”, 『해양정책연구』, 제5권 제3호·제4

호, 1990.

\_\_\_\_\_, “해양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0.

김석현,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국제분쟁의 의의 및 그 존재의 확인”,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2011.

김선표, “호주·뉴질랜드와 일본간 남방참다랑어 분쟁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 조치에 대한 법적 평가”, 『해양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1999.

김영구, “해양문제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상 제도의 고찰”, 『해사법연구』, 제3권, 1991.

김찬규, “국제분쟁의 조정과 유엔의 기능”, 『북한』, 제41호, 1975.

박찬호, “국제법상 심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고찰”, 『부산대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2009.

\_\_\_\_\_, “국제해양법법원을 통한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제6권, 1997.

배수경,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2011.

백진현, “유엔해양법협약의 체제의 평가와 전망”,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3호, 2005.

신창훈, “해양분쟁해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 : 현황, 문제점 및 전망”, 『제3회 해성세미나 발표논문집』, 2009.

\_\_\_\_\_,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제2호, 2005.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6.

\_\_\_\_\_. 강보석, “외국관할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제문제”, 『해사법연구』,

제17권 제1호, 2005.

이창위,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서울법학』, 제5권 제2호, 2002.

\_\_\_\_\_, “해양분쟁의 전개 및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 『국제법학회논총』, 제28권 제3호 2003.

정갑용,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의 Mixed Case에 대한 고찰”, 『영남대 독도연구』, 제5호, 2008.

정해웅, “유엔해양법협약이 동북아에 던져 준 난제와 대응방안”, 『독도연구저널』, 제18권, 2012.

최낙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해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1998.

최수정, “해양법판례연구-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제233호, 2004.

최종화,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치분명령”, 『해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1999.

최태현,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15권, 1998.

## II. 외국문헌

### 1. 단행본

Adede, A. O., *The system for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rdrecht/Boston/Lancaster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Anderson, David., "Article 28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omas A. Mensah, ed, *Law of the Sea, Environmental Law and*

- Settlement of Disputes*,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 Brown, E. 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1 Introductory Manual*, Dartmouth : Aldershot/Hants, 1994.
- Churchill, R. R. & Lowe, A. V.,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 Diaconu, Ion.,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States : History and Prospects", in R. St. J. Macdonald and Douglas M. Johnston, ed,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International Law : Essays in Legal Philosophy, Doctrine and Theory*,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6.
- Glahn, Von., *Law among nations :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 : Macmillan, 1976.
- Klein, Natalie., *Dispute Settlement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bridge : University Press, 2005.
- Malanczuk, Peter.,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New York : Routledge, 1997.
- Mensah, Thomas A., "The Role of Peaceful Dispute Settlement in Contemporary Ocean Policy and Law", in Davor Vidas and Willy Ostreng, ed, *Order for the Ocea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Hague/Boston : Kluwer International Law, 1999.
- Merrills, J. G.,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London : Sweet/Maxwell, 1984.
- Nisuke, Ando.,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and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a japanese perspective" in Thomas A. Mensah, ed, *Law of the Sea, Environmental Law and Settlement of Disputes*,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 Nordquist, Myron 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 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Rao, P. Chandasekhara., "Delimitations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Settlement Procedures", in Thomas A. Mensah, ed, *Law of the Sea, Environmental Law and Settlement of Disputes*,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Rothwell, Donald R. & Stephens, Tim.,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xford and Portland, Oregon : Hart Publishing, 2010.

Trek, Helmut., *Reflections on the Contemporary Law of the Sea*,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cation, 2012.

## 2. 논문

Adede, A. O.,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9, 1975.

\_\_\_\_\_, "The Basic Structure of the Disputes Settlement Part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1, 1982.

Anne, Sheehan., "Dispute Settlement under UNCLOS : The Exclusion of Maritime Delimitations Dispute", *University of Queensland Law Journal*, Vol. 24 No. 1, 2005.

Boyle, Alen E., "Dispute Settlement and the Law of the Sea : Problems of Fragmentation and Jurisdic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and Quarterly*, Vol. 46 No. 1 1997.

Colson, David A. & Peggy, Hoyle Dr., "Satisfying the Procedural Prerequisites to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f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 Did the Southern Bluefin Tuna Tribunal Get It Right?",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4 No. 1, 2003.

Dean, Arthur H., "The second geneva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The right for freedom of the sea",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 54 No. 4, 1960.

Gaertner, Marianne P.,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Critique and Alternatives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San Diego Law Review*, Vol. 19, 1981-1982.

Kindt, John Warre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 The Model Provided by the 1982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2, 1999.

Kwiatkowski, Barbara., "The Southern Bluefin Tuna Arbitral Tribunal Did Get It Right : A Commentary and Reply to the Article by David A. Colson and Dr. Peggy Hoyl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4 No. 3-4, 2003.

\_\_\_\_\_, "The Landmark 2006 UNCLOS ANNEX VII Barbados/Trinidad and Tobago Maritime Delimitation (Jurisdiction&Merits)Award, *Goe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39 No. 3, 2007.

Meltzer, E., "Global Overview of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 The Non-Sustainable Nature of High Seas Fisheri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25, 1994.

Noyes, John E., "Compulsory Third-Party Adjudication and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1988-1989.

Rosemary, Rayfuse., "The Future of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aw Review*, Vol. 36 No. 4, 2005.

S, Oda., "Dispute Settlement Prospects in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4 No. 4, 1995.

Tyagi, Yogesh K., "The System of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 An Overview", *The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5 No. 2, 1985.

### III. 기타자료

#### 1. 국제기구문서

U.N. Doc. No. A/CONF.13/L.52 1958

U.N. Doc. No. A/CONF.13/L.53 1958.

U.N. Doc. No. A/CONF.13/L.54 and Add.1 1958.

U.N. Doc. No. A/CONF.13/L.55 1958.

U.N. Doc. SD. GP/2nd Sess/No. 1/Rev. 5 1975.

United States, Draft Articles for a chapter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 Doc. A/AC. 138/97 1973. Reproduced in 28 UN GAOR Supp. 21, Vol.II, at 22-23. UN Doc. A/ 90211973.



## 2. 국제판례

Southern Bluefin Tuna Case (Australia and New Zealand v. Japan), Order ,  
ITLOS, 16 August 1999.

Mox Plant Case,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Ireland v. United Kingdom),  
Order, ITLOS, 13 November 2001.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Order, ITLOS, 10 September 2003.

Barbados/Trinidad and Tobago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Award,  
Arbitral Tribunal, 11 April 2006.

## 3. 웹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09708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611122&cp=nv>

[http://www.un.org/Depts/los/settlement\\_of\\_disputes/choice\\_procedure.htm](http://www.un.org/Depts/los/settlement_of_disputes/choice_procedure.htm)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htm#European%20Community%20Declaration%20made%20upon%20formal%20confirmation](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htm#European%20Community%20Declaration%20made%20upon%20formal%20confirmation)

<http://www.mofat.go.kr/>

<http://blog.daum.net/justicearmy/764554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1944425&code=9903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1944425&code=990303)